

2013-PR-09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Living Wage
in Seoul

최 봉 김범식



2013-PR-09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Living Wage
in Seoul

연구진

연구책임	최 봉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김범식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정현철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계조차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영국식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실행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결과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충분한 검토,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1.1.2 연구목적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적용대상 검토, 원활한 도입 추진을 위한 근거와 실행방안 등을 제시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적정 생활임금액을 제안

-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추진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실행방안을 마련

1.2 연구내용 및 방법

1.2.1 연구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 사례 분석
-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방안 마련
 - 서울시 현실을 고려한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도출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
 - 생활임금제 우선적용에 따른 예산부담 예측
 -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마련

1.2.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
-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자문

1.3 연구흐름

- 생활임금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
- 생활임금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생활임금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생활임금 산정
- 산정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및 실행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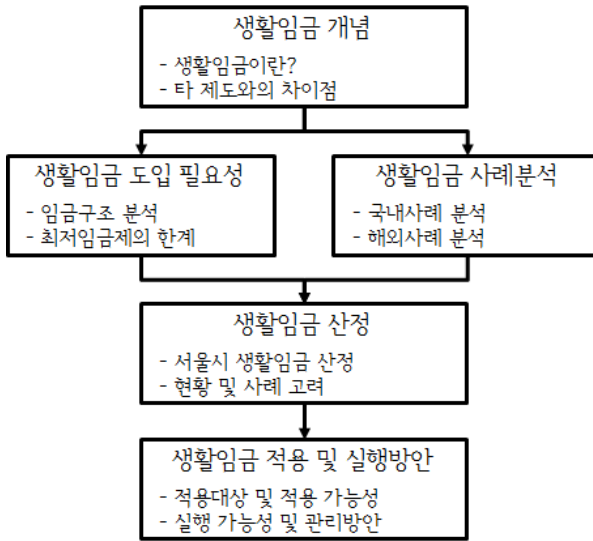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흐름도

1.4 생활임금이란?

1.4.1 생활임금의 정의

-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Mattew Pennycook, 2012)
- 생활임금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빈곤수준을 뛰어넘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의미
-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

2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2.1 소득 및 임금구조 분석

- 4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 심화는 저임금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 원활하지 못한 소득재분배 등의 요인에 기인
-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은 2010년 25.9%로 OECD 22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46.62%가 해당함

2.2 최저임금제의 한계

- 국내 최저임금은 2012년 현재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5.5% 수준에 불과하며 노사 간의 시각차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상 급격한 상승이 불가능한 구조임
-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2.3 생활임금제 도입의 효과

-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노동의 질이 향상됨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하여 사회보장 비용 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 기관에는 이직률 감소, 근로자 교육비용 감소 등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줌

3 생활임금제 시행사례

3.1 국내사례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부천시, 참여연대의 사례를 분석·정리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
- 부천시는 전면적인 실행을 위해 조례제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활임금액을 산정
- 참여연대는 가족의 개념을 고려하여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액을 제시함

표 1 국내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성북구·노원구	부천시	참여연대(2011)
생활임금액	6,493원	5,180원	5,630원~10,152원
산정방법	근로자 소득	실태조사	다양한 조합
산정기준	근로소득 1인	근로소득 1인	4인가구 소득 및 지출
특징	실행을 우선적 고려	조례제정을 고려	가구원 수를 고려
보완점	산정기준이 단순함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시급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3.2 해외사례

- 영국 런던, 미국,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
- 영국 런던은 지출과 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산정한 다음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를 가산
- 미국은 생활임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가구별·지역별 생활임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 뉴질랜드는 실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이미 제공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액을 현실화

표 2 해외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영국 런던(2012)	미국(2011)	뉴질랜드(2012)
생활임금액	8.55파운드 (약 14,809원)	지역별 가계구성별 다양	18.40뉴질랜드달러 (약 16,353원)
최저임금	6.19파운드 (약 10,721원)	지역별로 다양함 (보이즈시 7.25달러)	13.50뉴질랜드달러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4인가구 기준
산정방법	가계구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이용	기본비용에 세금지출 고려	도출된 지출항목값을 현실화
산정 기준	지출(생활비용)과 소득	지출(기본적인 생활비용)	지출(소비측면)
특징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부분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지역현황을 반영한 지출항목값 조정

4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4.1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

4.1.1 산정 기본방향

- 국내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본방향을 설정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및 참여연대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영국 런던, 미국 및 뉴질랜드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및 근로형태 가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
-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타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활용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데이터에 서울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방법 또는 전국데이터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서울의 현실을 반영한 통계자

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산정척도로 상대빈곤기준선을 활용
- 상대빈곤기준선은 소득과 지출의 평균 또는 중위값의 50%를 적용하여 산정

4 1 2 산정 기본가정

- 복잡한 실생활의 모든 변수 및 상황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계구성원, 가계 노동시간 등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근로시간은 2012년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참고하여 전일제 노동은 1일 8시간·월 209시간, 시간제 노동은 1일 6시간·월 156시간으로 가정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표준 가계 구성(4인가구)
 - 성인 ①은 전일제 노동(209시간)
 - 성인 ②는 시간제 노동(156시간)
 - 자녀 ①은 진학(초중고생)
 - 자녀 ②는 영유아(미취학)
 - 근로시간은 성인 ①과 성인 ②를 합쳐 총 365시간

4 2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방법

- 가계구성은 산정 기본가정에 나타난 4인 가구를 따름
- 성인(부부)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기본가정을 따름

4 2 1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산정

-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산정방법과 유사하지만 전일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의 특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음

- 2012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서울의 상용·비상용 근로자 소득을 파악하면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A)는 246만 9,814원, 서울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B)는 293만 8,614원, 전국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C)는 129만 2,739원으로 나타나지만 서울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서울의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는 비례식((A) : (C) = (B) : (D))을 사용하여 153만 8,116원으로 산정
- 월평균 정액급여를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근로형태별 시간급을 추정하면 서울의 상용근로자의 시급은 14,060원,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은 9,860원으로 추정
- 근로자 평균 임금을 고려한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은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에 상대빈곤기준인 평균(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시간급으로 계산한 값인 5,980원임
- $[\{(B)의 시급 14,060원 \times 1/2 = 7,030원\} + \{(D)의 시급 9,860원 \times 1/2 = 4,930원\}] \times 1/2 = 5,980원$

4.2.2 가계소득고려 생활임금 산정

- 4인가구의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국 런던의 소득을 이용한 생활임금 산정방법과 유사한 방식 적용
-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국 4인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405만 8천원이지만 지역별 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으며 이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지역 4인가구 소득은 470만 7,280원으로 추정

-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4인가구 소득 추정치에서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소득) 50%를 적용하여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6,448원임

4.2.3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

- 영국 런던, 뉴질랜드, 미국 등이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
- 이 연구에서는 4인가구의 지출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일부 값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산정
-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4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금액을 구한 후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중위값(지출) 50%를 적용한 값에 서울시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액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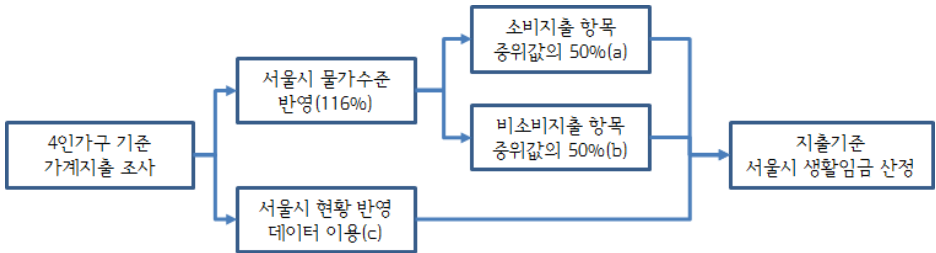


그림 2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 과정 모식도

- 가계동향조사의 일부 항목은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
- 서울의 현실을 반영한 주요 항목은 주거임대료, 사교육비, 보육비용 등임
-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249원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233만 6,854원이

- 며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 50%(a)를 적용하면 116만 8,427원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비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51만 5,817원이
며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 50%(b)를 적용하면 25만 7,908원
- 서울시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의 총 합계는 85만 4,400원(c)이며 주거
임대료 600,000원은 ‘서울시 주택실거래가자료’의 월세 43㎡(국토교
통부 제시 4인 최소 주거기준)의 월세평가액, 진학자녀 1인 사교육비
156,000원은 서울시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적용하고(사교육 항목은
논란의 소지가 많으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필수 지출로 인정), 영유아자녀 1인 지출금액 98,400원
은 소득 하위 30%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적용
- $\{(a) + (b) + (c)\} / 365(\text{총 근로시간}) = 6,249\text{원}$

4 2 4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 반영 생활임금 산정

- o 기존사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산정 방법으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일부 값은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
- o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을
제시해 주며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 5,550원
- o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으며, 이를 감안하면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173만 4,838원으로 추정
- o 서울시 현황 반영은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 방법에 나타난 계산
방법과 동일함
- o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생활임금은 6,116원
- ‘최저생계비에 서울시 물가수준 116%를 반영한 결과값에 주거비와 교
육비를 대체한 금액의 합인 223만 2,580원을 총 근로시간 365로 나누
면 6,116원

표 3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을 반영한 항목별 지출내역

항목	최저생계비(A)	서울 물가수준 반영 A×116%(B)	B의 현실화
식료품비	564,330	654,623	654,623
주거비	236,908	274,813	600,000
광열수도	110,389	128,051	128,051
가구집기	43,392	50,335	50,335
피복신발	61,694	71,565	71,565
보건의료	66,560	77,210	77,210
교육	70,556	81,845	254,400
교양오락	29,020	33,663	33,663
교통통신	152,606	177,023	177,023
기타소비	88,080	102,173	102,173
비소비	72,015	83,537	83,537
합계	1,495,550	1,734,838	2,232,580

4.2.5 산정방법 종합

-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액은 최저 5,980원에서 최대 6,448원까지 4가지 방안을 제시
-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가급적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4인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구성원(부부, 진학자녀, 영유아자녀)을 고려
- 서울시 생활임금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기준 방안을 선택

표 4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자료 원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기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기타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4인가구 전체소득	4인가구 가계지출	최저생계비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표 계속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빈곤기준 적용	근로소득의 평균 50%	가계소득의 중위수 50%	가계지출의 중위수 50%	-
특징	상용·비상용 근로자소득고려	가계 전체의 소득 기준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생활임금 추정액(원)	5,980	6,448	6,249	6,116
최저임금 대비 비율	약 1.23배	약 1.33배	약 1.29배	약 1.26배
장점	1인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국가의 최저생계기준 충족
적용의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어려움	비교적 어려움

4.3 우선적용대상 검토 및 적용 가능성 검토

4.3.1 우선적용대상 선정

- 우선적용대상 선정 기준은 민간위탁사업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임금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성이 있는 기관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공공부문과 관련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우선적용대상자로 선정

4.3.2 우선적용대상의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3월 1일 현재 1,853명(정규직 1,521명, 비정규직 33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민간위탁 사업은 총 20개, 소요예산은 1,935억 2,190만 1,000원
-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정규직 92명¹은 우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분류

- 2012년 12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만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공제 이전의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월 8,820원~1,232,91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제금액(4대보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를 파악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등은 총지급액에서 제외

표 5 생활임금 적용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추가소요금액 추정

(단위 : 원)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생활임금 시간급	5,980	6,448	6,249	6,116
생활임금 월급	1,249,820	1,347,632	1,306,041	1,278,244
적용대상인원	1명	19명	16명	15명
월 소요금액 추정	8,820	1,232,918	499,107	61,660

4.4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 설계(안)

4.4.1 개요

- 생활임금 계산기는 다양한 가계형태를 반영하고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 미국의 생활임금 계산기는 지역 및 가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음
- 2000년 생활임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4년 첫 번째 버전이 탄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생활임금 적정 금액을 제공해주고 있음
- 서울의 가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 방안을 모색

1 비정규근로자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별 인원이 지속적으로 변동됨

4.4.2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과정

- 가구원 수와 가족 구성원을 고려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출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부터 N인가구까지 가구원별 생활임금에는 차이가 발생
- 가구원 수가 동일해도 4인가구 기준 총 7개의 가구유형이 존재(편부모, 자녀의 취학 여부 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가계 구성 가능
- 지역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서울시 구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며, 주거지와 일터가 다를 경우에 생활임금 적용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함

4.4.3 생활임금 계산기 결과

- 1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1인가구의 시간급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시에는 생활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2인가구의 맞벌이는 근로시간이 많아 시간급 생활임금이 낮게 책정되므로 편부모 가계만 대상으로 우선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주거임대료는 400,000원으로 월세 2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
- 편부모와 부양자녀 1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194원에서 최대 9,319원
- 3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3인가구 중 편부모 가계는 생활임금 계산기 작성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에 부양자녀가 1명인 가계는 낮은 시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보정작업이 필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주거임대료는 500,000원으로 월세 3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
- 편부모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8,362원에서 최대 13,173원
 - 4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4인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고려
- 부부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203원에서 최대 15,989원

5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5.1 정책의 기본방향

5.1.1 생활임금은 가족임금

- 생활임금은 가족임금(family wage)의 개념을 관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규모로 제시되어야 함

5.1.2 용이한 실행 전제

-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정교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1.3 시범사업 적용 후 전면도입 검토

- 국내에는 생활임금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실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면적인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에 앞서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5 1 4 **생활임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
- 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도시행 여부의 핵심의 사결정자 중 하나인 시의회 등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행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둬

5 1 5 **제도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근거가 필요하며 조례제정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지자체장 또는 시의회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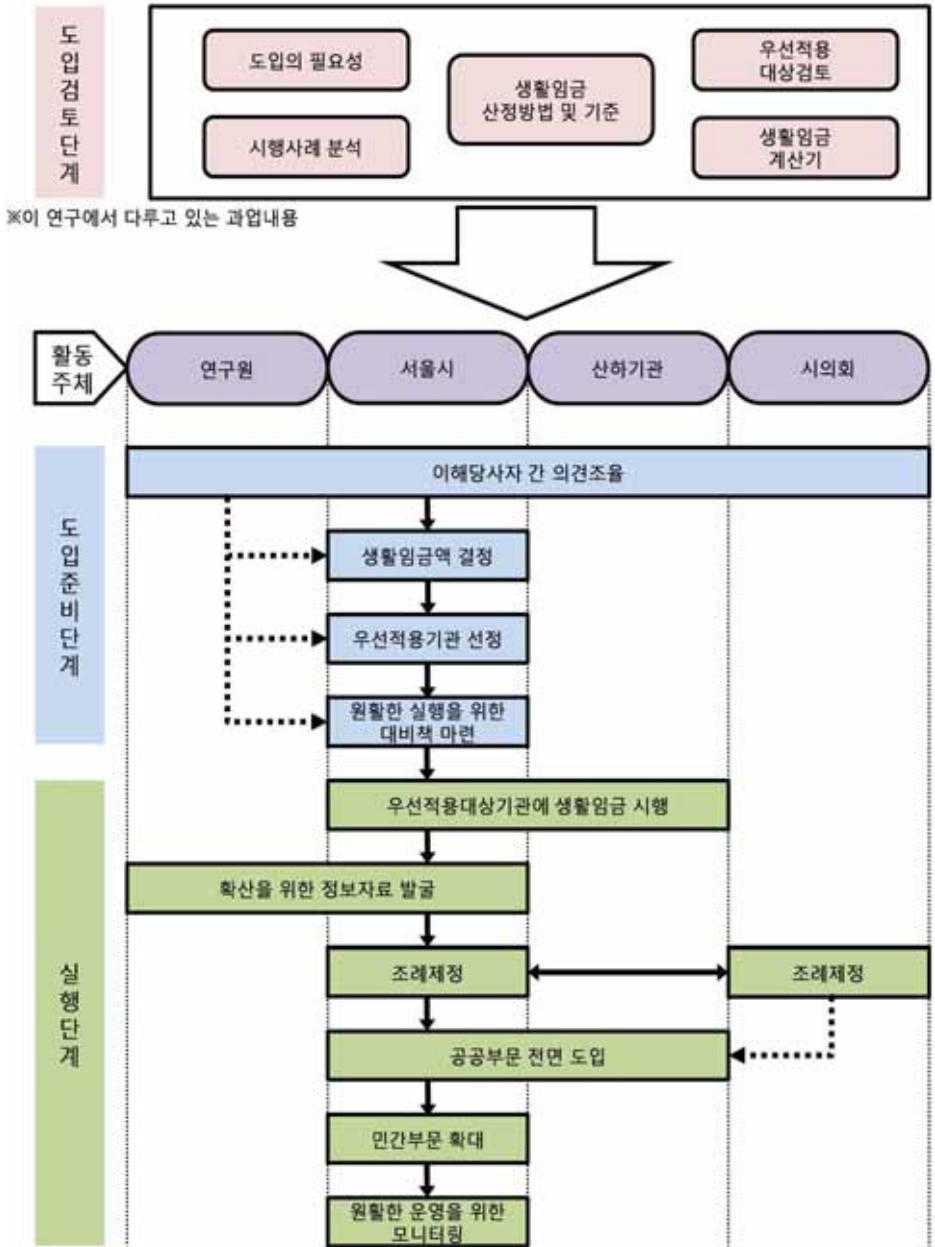


그림 3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모식도

5 2 1 도입검토단계

- 도입검토단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과업내용
- 연구내용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시행사례, 생활임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생활임금 우선적용대상 검토,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 제시 등으로 구성

5 2 2 도입준비단계

1)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 서울시, 시의회, 산하기관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생활임금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노력이 필요함
- 사용자측은 생활임금이 급여 역할을 하므로 임금지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하게 되면 근로시간과 연동해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근로자측은 생활임금이 가족임금이므로 노동을 통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라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함
 - 생활비는 통상 월단위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로 산정하기 어려움
-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도 진행되어야 함
- 추후 생활임금 조례를 염두에 둔다면 시의회의 설득은 필수적임

2) 생활임금액 결정

- 소득·지출 등을 고려한 4가지 산정방법 가운데 적용이 용이하면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한 후 산정식 구성요소에 대한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제시한 산정방법에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추가하여 생활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
- 3) **우선적용기관(대상자) 선정**
 - 앞서 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전면도입보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임금수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용대상을 물색
- 4)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 생활임금제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
 - 문헌자료 및 국내외 우선적용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참조

※ 서울시 노원구 사례

- 2013년 생활임금 적용 후 일부 부작용 발생
- 초과근무 거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 노원구의 사례는 생활임금제 시행방법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운영, 적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매뉴얼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5.2.3 실행단계

- 1) **우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실행**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원활하게 실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용 대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 근로자들의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임금제 적용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파악
- 2)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 발굴**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의 과중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분석하여 적용기관 확대, 공공부문 전면도입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
- 3) **조례제정**
-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
 - 서울시와 시의회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례제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함
- 4)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
-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 우선적용기관의 실행 성과가 충분하게 검증되면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을 추진
 -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의 공공부문 전면도입을 전제로 하되, 도입 절차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 생활임금제 도입의 진정한 목표는 이 제도가 민간부문의 동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부문에 비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기업)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일부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 6)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 사용자·근로자측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생활임금제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
 -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수정사항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 시 보완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 7) 생활임금 계산기의 정교화 작업 지속 및 활용
-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를 근간으로, 계산기가 더욱 다양한 가족유형,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생활임금 계산기는 적정임금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노동·복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

차례

I	연구개요	34
1	연구배경 및 목적	34
11	연구배경	34
12	연구목적	35
2	연구내용 및 방법	36
21	연구내용	36
22	연구방법	37
3	연구흐름	37
4	생활임금이란?	38
41	생활임금의 정의	38
42	생활임금의 도입 및 확산	39
43	최저임금·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의 비교	41
II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44
1	소득 및 임금구조 분석	44
11	가계소득	44
12	소득불평등심화	44
13	빈곤층 현황	46
14	임금소득 현황	48
15	근로소득 비교	50
2	최저임금제의 한계	52
21	최저임금제 개요	52
22	국내 최저임금 현황	54

23	최저임금의 국제비교	55
24	국내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58
3	생활임금제 도입 효과	60
31	생활임금제 도입과 노동자와의 관계	60
32	생활임금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62
33	생활임금제 도입과 기업생산성과의 관계	63
III	생활임금제 시행사례	66
1	국내사례	66
11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66
12	경기도 부천시	71
13	참여연대	77
14	국내사례 종합	82
2	해외사례	83
21	영국 런던	83
22	뉴질랜드	94
23	미국	102
24	종합	106
IV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110
1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110
11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	110
12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방법	113
2	적용대상 검토	121
21	근로형태에 따른 적용대상자 검토	121
22	우선적용대상 검토	122
23	우선적용대상(서울시설관리공단)의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123

3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 설계(안)	125
3 1	개요	125
3 2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과정	126
3 3	생활임금 계산기 결과	127
V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134
1	정책의 기본방향	134
1 1	생활임금은 가족임금	134
1 2	용이한 실행 전제	134
1 3	시범사업 적용 후 전면도입 검토	135
1 4	생활임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35
1 5	제도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135
2	실행방안	136
2 1	도입검토단계	138
2 2	도입준비단계	138
2 3	실행단계	141
	참고문헌	150
	Abstract	154

표차례

표 1-1	최저임금과 월 가계지출 비교	34
표 1-2	생활임금·최저임금·최저생계비 개념	41
표 2-1	지니계수 추이	45
표 2-2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 추이	45
표 2-3	5분위배율 추이	46
표 2-4	2010년 OECD 빈곤갭과 빈곤율 현황	48
표 2-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현황	49
표 2-6	근로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현황	49
표 2-7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현황	50
표 2-8	2010년 OECD 저소득층 비율	51
표 2-9	산업코드별 서울시 임금수준 현황	52
표 2-10	국내 최저임금 현황	54
표 2-11	2012년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56
표 2-12	2011년 국가별 평균·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현황	57
표 2-13	2013년 최저생계비	59
표 2-14	최저임금과 1인가구 월 가계지출의 비교	60
표 3-1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	68
표 3-2	노원구의 생활임금 소요예산 상세	68
표 3-3	노원구 생활임금 우선적용 지급대상자 상세	69
표 3-4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69
표 3-5	경제활동지표 비교	71
표 3-6	부천시 임금실태조사 개요	73
표 3-7	조정구간의 설정(~ 5,800원)	75

표 3-8	인상률 조정에 따른 비용의 변화	76
표 3-9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항목 및 구성비 : 1인 및 4인가구	78
표 3-10	1안 : 단신근로자 기준, 주거비-교육비 적정화	79
표 3-11	2안 :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의 1/2(맞벌이 기준)	80
표 3-12	3안 :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적용 1인 생계비 산출	81
표 3-13	참여연대 생활임금안 비교(2011년 기준)	81
표 3-14	국내 생활임금 사례 종합	83
표 3-15	아이가 있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소득	85
표 3-16	아이가 없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소득	86
표 3-17	1주 교통비용	88
표 3-18	아이가 있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기본생활비용	89
표 3-19	아이가 없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기본생활비용	89
표 3-20	최저임금을 적용한 1주당 소득과 비용 비교 1	90
표 3-21	최저임금을 적용한 1주당 소득과 비용 비교 2	90
표 3-22	기본생활비용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1	91
표 3-23	기본생활비용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2	91
표 3-24	가계 유형에 따른 가처분 소득 임계치	92
표 3-25	중위소득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1	93
표 3-26	중위소득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2	93
표 3-27	가중평균을 통한 빈곤한계 시간급	94
표 3-28	뉴질랜드 생활임금 포커스 그룹 조사결과	97
표 3-29	2차자료를 반영한 지출항목 수정	98
표 3-30	유사한 항목과 비교	99
표 3-31	HES와 포커스그룹(FG) 조사결과에 따른 생활임금액 추정	100
표 3-32	전국과 오클랜드 지역의 생활임금액 비교	101
표 3-33	2011년 보이즈시의 항목별 생활임금	104
표 3-34	해외 생활임금 사례 종합	107

표 4-1	주요기관 및 국가의 상대빈곤기준선	111
표 4-2	2010년 서울시 가구원수별 세대 수 및 인원 수	112
표 4-3	가계동향조사 2012년 소비지출 중위수 및 서울 물가 반영	117
표 4-4	가계동향조사 2012년 비소비지출 중위수 및 서울 물가 반영	117
표 4-5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을 반영한 항목별 지출내역	119
표 4-6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120
표 4-7	생활임금 적용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추가소요금액 추정	125
표 4-8	편부모+진학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28
표 4-9	편부모+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28
표 4-10	편부모+진학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29
표 4-11	편부모+진학자녀+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29
표 4-12	편부모+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29
표 4-13	부부+진학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0
표 4-14	부부+진학자녀+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0
표 4-15	부부+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0
표 4-16	편부모+진학자녀 3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1
표 4-17	편부모+진학자녀 2명+영유아자녀 1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1
표 4-18	편부모+진학자녀 1명+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1
표 4-19	편부모+영유아자녀 3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131
표 5-1	우선적용대상 후보 선정	140
표 5-2	기관별 예산부담 추정	142
표 5-3	생활임금제 도입에 실패한 이유 및 도시	144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38
그림 2-1	4인가구 평균 가계소득 추이	44
그림 2-2	2010년 OECD 상대적 빈곤율 현황	47
그림 2-3	최저임금과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	55
그림 3-1	생활임금 계산기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활임금	105
그림 4-1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 과정 모식도	117
그림 5-1	생활임금 슬로건	134
그림 5-2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모식도	137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흐름
- 4 생활임금이란?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1.1.1 최저임금제의 한계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여 공표
-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계조차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2012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95만 7,220원으로 2012년 1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비용인 128만 6,557원보다 약 33만원이 적음

표 1-1 최저임금과 월 가계지출 비교

(단위 : 원)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일급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A)	1인가구 월 가계지출 (명목),(B)	(A)/(B)
2006	3,100	24,800	647,900	958,730	67.58%
2007	3,480	27,840	727,320	1,081,996	67.22%
2008	3,770	30,160	787,930	1,118,567	70.44%
2009	4,000	32,000	836,000	1,117,068	74.84%
2010	4,110	32,880	858,990	1,176,552	73.01%
2011	4,320	34,560	902,880	1,243,031	72.64%
2012	4,580	36,640	957,220	1,286,557	74.4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국가통계포털

-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들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family wage)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평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 생활임금은 실질적인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되며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임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112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성과 확인

- 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영국식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실행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결과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및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3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생활임금은 소득부문 중점사항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
- 하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관련 국내연구가 부족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12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적용대상 검토, 원활한 도입 추진을 위한 근거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1 2 1 **서울시의 생활임금 제시**
 - 서울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제시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과정 및 적정 생활임금액 제시
 -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산정

- 1 2 2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을 위한 근거 제시**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서울시의 현실과 해외 주요국의 생활임금 트렌드를 반영
 - 생활임금액 산출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2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 사례 분석
-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방안 마련
- 서울시 현실을 고려한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도출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
- 생활임금제 우선적용에 따른 예산부담 예측
-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마련

2.2 **연구방법**

2.2.1 **문헌연구**

- 생활임금 관련 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그 외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함

2.2.2 **사례연구**

- 국내의 생활임금제 실행 기관 및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생활임금 관련 현황을 파악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이슈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반영

2.2.3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방안 및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의 자문을 받음

3 **연구흐름**

- 생활임금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
- 생활임금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생활임금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생활임금 산정
- 산정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및 실행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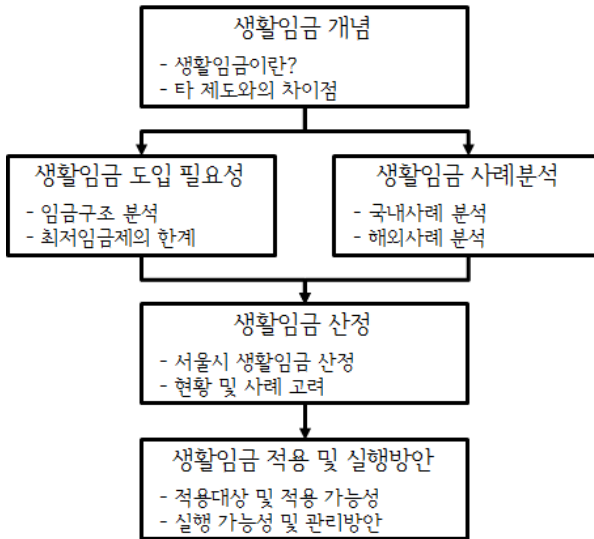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흐름도

4 생활임금이란?

4.1 생활임금의 정의

-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Mattew Pennycook, 2012)
- 생활임금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빈곤수준을 뛰어넘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의미
-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

4.2 생활임금의 도입 및 확산

4.2.1 생활임금제의 시작

- 미국 노동계급의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종의 관습적 또는 문화적 규칙이나 관행으로 이해됨(권순원, 2012)
- 당시에는 생활임금이 ‘가족임금’의 개념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지칭하였음
- 생활임금운동은 1994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 중임
- 국내에서는 참여연대·노원구·성북구가 공동으로 생활임금제 적용방안에 대해 모색
- 노원구 및 성북구는 2013년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

4.2.2 미국의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산²

- 생활임금은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됨
- 현대적인 생활임금운동은 1994년 볼티모어에서 시작
- 주, 시,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
- 추후 빠르게 확산되어 1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

4.2.3 영국의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산

-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캠페인
- 2001년 런던 동부지역에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캠페인을 벌임

² 황선자·이철(2008)의 연구 참고

- 이후 생활임금 캠페인은 본격화
- o 2006년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런던의 생활임금을 준비
- 2006년 이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제시
- o 2012년 런던올림픽에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적용
- 런던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생활임금을 적용
- o 현재 런던 생활임금제에 250개의 민간기업이 참여

4.2.4 국내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산

- o 국내의 생활임금 논의의 주체는 노동조합·시민단체·기초지자체임
-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
- 현재까지는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 o 국내에서의 생활임금 논의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
-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되어 진행
- 공공기관의 정책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o 생활임금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타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서울시 노원구 및 성북구로 생활임금제 관련 문의를 하고 있음
-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o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2014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수립 중임

4 3 최저임금·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의 비교

4 3 1 기본개념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여 고시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 생활임금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

표 1-2 생활임금·최저임금·최저생계비 개념

제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형태	조례, 개별사업장 협상	법률(최저임금법)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	제도 혹은 협상에 의한 특정 직무, 직무종사자	전체 임금노동자	특정 소득수준, 수급대상자
법적 활용	공공부문의 하청 조달계약 민간영역에 시행	휴가액, 실업급여 등 14개 법령의 근거	수당,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근거

자료 :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업무추진계획(노원구, 2012)

4 3 2 공통점

-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요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층
- 임금(wage) 또는 생활비의 하한선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빈곤기준 역할을 하기도 함

4 3 3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비교

1) 개념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액을 의미
- 생활임금은 연간 풀타임 노동자를 가진 가족의 생활비에 상응하는 임금을 의미

- 2)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생활임금은 개별 사업장 또는 특정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됨
- 3) **임금수준**
 -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음
 - 최저임금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market)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 생활임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
- 4) **임금 계산단위**
 - 최저임금은 임금 근로자 한 사람의 급여수준을 의미
 - 생활임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포함됨에 따라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수준

4.3.4 **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의 비교**

- 1) **개념**
 - 최저생계비는 가계의 지출에 따른 최저생활비 수준
 -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수준의 금액으로 노동이 필수적인 요건임
- 2) **적용대상**
 - 최저생계비는 사회복지개념으로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적용대상
 - 생활임금은 노동임금이므로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됨
- 3) **접근방법**
 - 최저생계비는 주로 사회복지기준선의 개념으로 접근
 -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임금으로 접근

II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1 소득 및 임금구조 분석
- 2 최저임금제의 한계
- 3 생활임금제 도입 효과

II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1 소득 및 임금구조 분석

1.1 가계소득

- 4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6년간 약 125만원 증가
- 2006년 약 350만원이던 가계소득은 2012년 약 475만원으로 연평균 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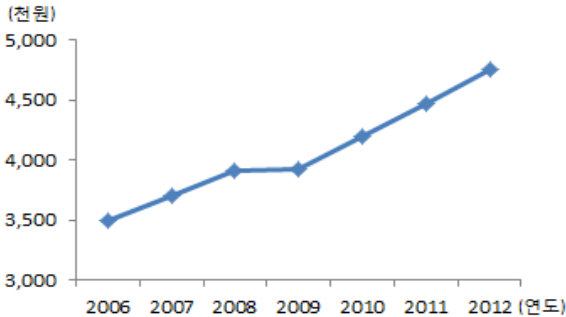


그림 2-1 4인가구 평균 가계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각 연도

1.2 소득불평등심화

-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
- 가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³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3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표 2-1 지니계수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시장소득 ²⁾	0.266	0.259	0.279	0.298	0.315	0.310
가처분소득 ³⁾	0.256	0.251	0.266	0.281	0.289	0.285

주 : 1) 도시가계 2인 이상 기준

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3)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자료 : 통계청, 가계소득지출, KOSIS

- 중산층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비중은 늘어남
- 중위소득(median income) 50% 미만의 소득 하위층과 150% 이상의 상위층 비중은 증가
-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감소

표 2-2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 추이

구분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하위층 (중위소득 50% 미만)	7.1	7.7	9.2	11.9	12.5	12.1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75.4	75.3	71.7	69.2	67.5	69.1
상위층 (중위소득 150% 이상)	17.5	16.9	19.0	18.9	20.0	18.8

주 : 도시가계 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소득지출, KOSIS

- 소득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
-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속도를 저소득층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5분위배율⁴⁾은 1990년 3.72배에서 2012년 4.67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4

5분위배율 =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

표 2-3 5분위배율 추이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5분위배율	3.72	3.68	4.05	4.55	4.82	4.67

주 : 도시가계 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소득지출, KOSIS, 각 연도

-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 저임금근로자의 확대로 인해 임금격차가 커짐
-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증가
- 소득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조세 및 급여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한국의 조세와 급여(tax and benefit)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매우 낮은 수준임(OECD, 2011)
-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정도를 측정
- 조세와 급여 시스템의 불평등 감소율은 7%에 불과하였으며, 이 수준은 OECD 평균인 25%에 훨씬 못 미침

13 빈곤층 현황

13.1 빈곤층

- 빈곤층은 전체 인구 중 가계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의미
- 빈곤선이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
- 즉, OECD의 기준을 따르면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

132 빈곤율과 빈곤갭

- 빈곤율은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
- 빈곤갭이란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로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빈곤선보다 어느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예를들어 빈곤선이 100만원이고 빈곤갭이 30%라면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의 30% 이하인 70만원이 되는 것임
-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빈곤갭은 커짐

133 빈곤율과 빈곤갭을 이용한 빈곤층 유추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을 나타내며 2010년 OECD 평균은 11.1%이며 한국은 14.9%
- 한국은 OECD 국가 34개국 중 8위로 비교적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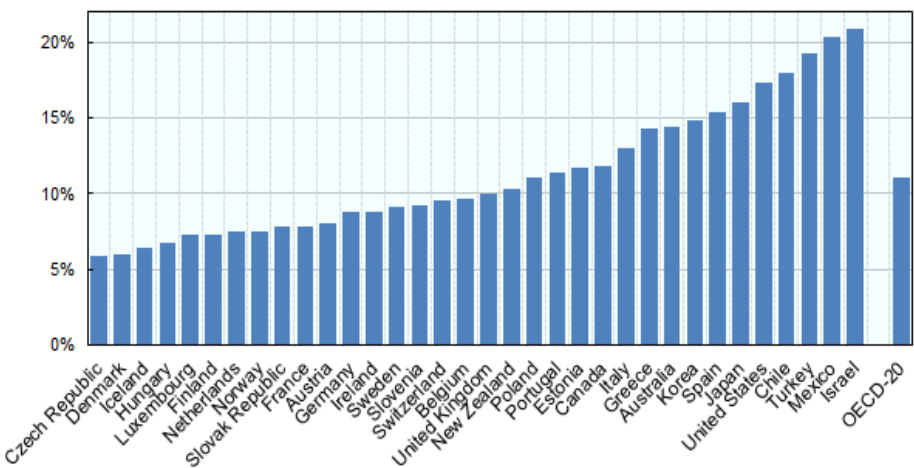


그림 2-2 2010년 OECD 상대적 빈곤율 현황

자료 : OECD stat

- 빈곤율이 동일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빈곤의 상대적 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빈곤갭을 측정
- 빈곤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갭이 큰 것이 일반적
- 2010년 한국의 빈곤갭은 0.343으로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
- 빈곤율에 비해 빈곤갭의 순위가 높음
- 한국은 빈곤율이 높으며 빈곤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유추

표 2-4 2010년 OECD 빈곤갭과 빈곤율 현황

국가	빈곤갭	순위	빈곤율	순위	국가	빈곤갭	순위	빈곤율	순위
한국	0.343	2	0.149	8	일본*	0.302	5	0.16	6
호주	0.164	31	0.144	9	룩셈부르크	0.164	31	0.072	30
오스트리아	0.165	30	0.081	24	멕시코	0.378	1	0.204	2
벨기에	0.158	33	0.097	18	네덜란드	0.212	20	0.075	27
캐나다	0.235	16	0.119	12	뉴질랜드*	0.178	28	0.103	16
칠레*	0.278	10	0.185	4	노르웨이	0.284	9	0.075	27
체코	0.193	24	0.058	34	폴란드	0.232	17	0.11	15
덴마크	0.172	29	0.06	33	포르투갈	0.199	21	0.114	14
에스토니아	0.276	11	0.117	13	슬로바키아	0.262	13	0.078	26
핀란드	0.15	34	0.073	29	슬로베니아	0.195	23	0.092	20
프랑스	0.188	27	0.079	25	스페인	0.326	3	0.154	7
독일	0.19	25	0.088	23	스웨덴	0.19	25	0.091	21
그리스	0.259	14	0.143	10	스위스*	0.198	22	0.095	19
헝가리*	0.226	19	0.068	31	터키*	0.286	8	0.193	3
아이슬란드	0.244	15	0.064	32	영국	0.232	17	0.1	17
아일랜드*	0.273	12	0.09	22	미국	0.316	4	0.174	5
이스라엘	0.3	6	0.209	1	이탈리아	0.296	7	0.13	11

주 : *2009년 기준
 자료 : OECD STAT

14 임금소득 현황

- 소득불평등 심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임금이므로 소득불평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함

- 특히, 한국은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 o 근로소득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함
- 2008년 이후 근로형태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내외 수준에 그침

표 2-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A)	250	255	266	272	277	283
비정규직(B)	125	120	125	132	138	140
(B)/(A)	50.00%	47.06%	46.99%	48.53%	49.82%	49.47%

주 : *2013년은 3월 기준이며 그 이외의 연도는 8월 기준

자료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시간당 평균임금은 월평균 임금에 비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해 시간당 평균임금의 비중이 월급여 수준에 비해 높음

표 2-6 근로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A)	13,238	13,730	14,401	14,831	15,286	15,638
비정규직(B)	6,704	6,650	6,951	7,603	7,918	8,145
(B)/(A)	50.64%	48.43%	48.27%	51.26%	51.80%	52.08%

주 : *2013년은 3월 기준이며 그 이외의 연도는 8월 기준

자료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5 근로소득 비교

15.1 저임금계층 정의

- EU LoWER(EU 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유럽 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정의(김유선, 2013)
- 201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시급 6,423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 한국의 2013년 기준 중위임금은 시급기준 9,635원

15.2 국내 저임금노동자 현황

- 2013년 기준 전체 1774만 3천명의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는 25.1%에 해당하는 445만 4천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음
- 정규직 약 956만 2천명 중 저임금노동자는 64만명으로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약 6.69%가 저임금계층
- 비정규직 약 818만 1천명 중 저임금노동자는 381만 4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46.62%가 저임금계층
- 전체 저임금노동자 중에서 85.63%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

표 2-7 근로형태별 저임금노동자 현황

구분	(단위 : 천명)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A)	17,743	9,562	8,181
저임금노동자(B)	4,454	640	3,814
(B)/(A)	25.10%	6.69%	46.62%

자료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3)

15.3 저임금계층 비율의 국제비교

- OECD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은 25.9%로 22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음

표 2-8 2010년 OECD 저소득층 비율

국가	비율(%)	순위국가	비율(%)	순위
한국	25.9	1호주	16.1	12
미국	25.3	2스페인	15.6	13
이스라엘	22.3	3일본	14.5	14
캐나다	21.1	4덴마크	13.4	15
헝가리	21	5그리스	13.3	16
영국	20.7	6뉴질랜드	12.8	17
아일랜드	20.1	7이탈리아	9.5	18
슬로바키아	20	8스위스	9.2	19
폴란드	19.6	9포르투갈	8.9	20
독일	18.8	10핀란드	8.1	21
오스트리아	16.5	11벨기에	4.3	22

자료 : OECD stat

154 산업별 근로소득 현황

- 201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월평균임금은 235만 7,400원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차이를 보임
-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U)’이 359만 1,7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이 351만 4,000원, ‘금융 및 보험업(K)’이 349만 1,200원 순으로 나타남
- 평균임금이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I)’이 141만 2,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이 160만 7,400원 순으로 파악됨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은 제외
-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350만원이 넘는 반면, 평균임금이 낮은 산업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2-9 산업코드별 서울시 임금수준 현황

산업코드별	(단위 : 만원)	
	3개월 평균임금	
A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212.50
C 제조업(10 ~ 33)		239.4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 36)		351.40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 ~ 39)		227.35
F 건설업(41 ~ 42)		241.45
G 도매 및 소매업(45~47)		213.43
H 운수업(49~52)		235.66
I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141.2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307.17
K 금융 및 보험업(64 ~ 66)		349.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168.9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327.0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160.7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72.48
P 교육 서비스업(85)		246.8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11.7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70.3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84.7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94.56
U 국제 및 외국기관(99)		359.17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서울 기준

2 최저임금제의 한계

2.1 최저임금제 개요⁵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⁵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참고

-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어 1938년에는 미국, 1950년에는 프랑스에서 시행되었음
- 한국은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시행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년 10월)
 - 국내 최저임금제의 역사
 -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됨
 -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최초 10인 이상 제조업체였지만 추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확대되어 2000년 11월 24일 이후 1인 이상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
 - 국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협상에 의해 결정
 -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속위원들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최저임금제의 효과(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2 국내 최저임금 현황

- 국내 최저임금은 2006년 3,10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연평균 6.7% 상승
 -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전년 대비 7.2% 상승한 금액
 -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나타냄
 - 2006년 이후 최저임금의 증가율은 2.75%~12.3%로 최대 약 10%p의 차이를 보임
 - 정부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의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표 2-10 국내 최저임금 현황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단위 : 원)	
			일급 최저임금 (8시간 기준)	월급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2006	3,100	9.2	24,800	647,900
2007	3,480	12.3	27,840	727,320
2008	3,770	8.3	30,160	787,930
2009	4,000	6.1	32,000	836,000
2010	4,110	2.75	32,880	858,990
2011	4,320	5.1	34,560	902,880
2012	4,580	6	36,640	957,220
2013	4,860	6.1	38,880	1,015,740
2014	5,210	7.2	41,680	1,088,89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월 최저임금 현황
-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월 최저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현재 45.5%로 나타남
- EU는 최저임금을 월평균 임금대비 6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EU의 권고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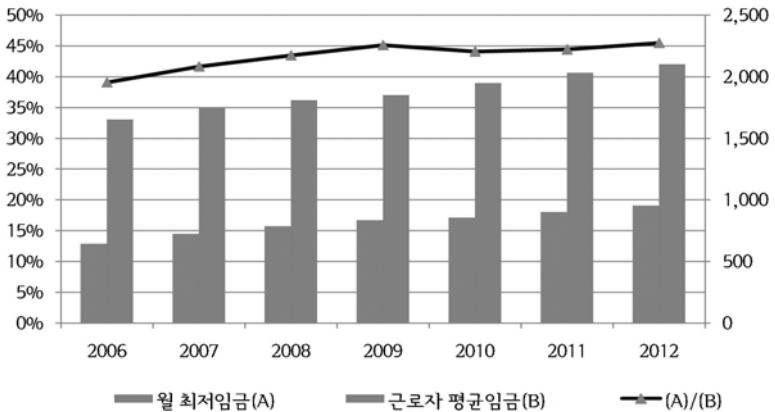


그림 2-3 최저임금과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2.3 최저임금의 국제비교

- 2012년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현황(미국달러 기준)
- 명목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이며 그 뒤로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의 순
- 구매력 기준(PPP) 최저임금도 상위 4개국가는 동일함
- 명목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이며 그 위로는 에스토니아, 칠레의 순
- 구매력 기준 최저임금도 하위 3개 국가는 동일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
- 명목 최저임금은 3.98달러로 26개 국가 중 17위, 구매력 기준 최저임금은 4.86달러로 26개 국가 중 15위

표 2-11 2012년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미국달러)

국가	최저임금 (환율 기준)	순위	최저임금 (구매력 기준)	순위
호주	16.00	1	9.77	3
룩셈부르크	13.35	2	10.37	1
프랑스	11.73	3	10.17	2
벨기에	10.99	4	9.46	4
아일랜드	10.93	5	8.97	6
뉴질랜드	10.73	6	8.17	8
네덜란드	10.47	7	9.25	5
캐나다	9.85	8	7.59	9
영국	9.38	9	8.24	7
일본	9.24	10	6.29	12
오스트리아	7.23	11	6.50	11
미국	7.10	12	7.10	10
이스라엘	5.69	13	4.88	14
슬로베니아	5.50	14	6.12	13
스페인	4.63	15	4.55	16
그리스	4.28	16	4.28	17
한국	3.98	17	4.86	15
포르투갈	3.49	18	3.83	20
터키	2.69	19	3.95	19
폴란드	2.56	20	4.19	18
슬로바키아	2.42	21	3.19	22
체코	2.38	22	3.04	23
헝가리	2.26	23	3.47	21
칠레	2.15	24	2.80	24
에스토니아	2.06	25	2.53	25
멕시코	0.55	26	0.80	26

자료 : OECD stats

-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이며 그다

- 음은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남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이며 이어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4%, 중위임금 대비 41%로 28개 OECD 국가 중 각각 22위와 23위로 하위권

표 2-12 2011년 국가별 평균·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현황

국가	평균임금 기준 비율(%)	평균기준 순위	중위임금 기준 비율(%)	중위수 기준 순위
뉴질랜드	0.51	1	0.59	4
프랑스	0.48	2	0.6	3
슬로베니아	0.47	3	0.58	5
호주	0.45	4	0.54	9
아일랜드	0.44	5	0.48	14
벨기에	0.43	6	0.5	11
칠레	0.43	6	0.67	2
라트비아	0.43	8	0.57	6
이스라엘	0.42	9	0.56	8
네덜란드	0.42	10	0.47	16
캐나다	0.4	11	0.45	19
포르투갈	0.39	12	0.57	7
영국	0.38	13	0.47	17
터키	0.38	14	0.71	1
리투아니아	0.36	15	0.48	13
폴란드	0.36	15	0.45	20
헝가리	0.36	15	0.5	12
슬로바키아	0.36	18	0.46	18
그리스	0.35	19	0.51	10
스페인	0.35	19	0.44	21
룩셈부르크	0.35	21	0.42	22
한국	0.34	22	0.41	23
일본	0.33	23	0.38	25
루마니아	0.33	24	0.48	14
에스토니아	0.32	25	0.39	24
체코	0.29	26	0.35	27
미국	0.28	27	0.38	26
멕시코	0.18	28	0	28

자료 : OECD stats

2.4.1 최저임금 결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시각차로 불만 고조
 -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불만을 제기함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비판
 - 알바연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현행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음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하여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
 - 일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이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있음
 -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음
 - 월 최저임금이 월평균 임금근로자 급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년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나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실제 의견차를 좁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사용자측의 임금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최저임금의 현실 반영 한계

-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지역의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름
 -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 최저임금만으로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음
- 최저임금의 개념은 가족임금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
 - 현재의 최저임금은 가구현황의 다양한 요소(가구원 수, 근로형태, 자녀 수 등)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임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짐
-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는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음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함
 -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54만 6,399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26만 315원으로 2013년 최저임금인 101만 5,740원에 비해 많음

표 2-13 2013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가구형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자료 : 보건복지부

- 최저임금의 월급수준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함

- 1인가구 월 가계지출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75% 수준에 불과

표 2-14 최저임금과 1인가구 월 가계지출의 비교

(단위 : 원)

연도	월급 최저임금 (209시간), (A)	1인가구 월 가계지출 (명목), (B)	(A)/(B)
2006	647,900	958,730	67.58%
2007	727,320	1,081,996	67.22%
2008	787,930	1,118,567	70.44%
2009	836,000	1,117,068	74.84%
2010	858,990	1,176,552	73.01%
2011	902,880	1,243,031	72.64%
2012	957,220	1,286,557	74.4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4.3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최저임금의 적용 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음
-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이후에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함
- 최저임금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생활임금제 도입 효과

3.1 생활임금제 도입과 노동자와의 관계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생활임금제 도입과 일자리 감소는 관련이 없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기도 함
 - 볼티모어와 보스턴에서는 고용 감소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학 노동자와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증가하였음
- o 생활임금조례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2012)
- 생활임금조례는 지방정부가 노동자에게 빈곤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생활임금조례가 없으면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를 위해 기업에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조장할 수 있음
- o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며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됨 (Jane Wills and Brain Linneker, 2012)
-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이익을 경험함
 -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54%가 이익을 경험
-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노동자의 32%가 그들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답함
-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8%가 재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응답
- o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영국 living wage foundation의 “Living Wage : A Guide For Employers” 자료에 따르면 75%의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 결과, 노동의 질이 올랐다고 답함
- o 노원구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성취와 가족의 삶이 개선됨
- 인상된 급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생활임금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활임금제도의 실제 예산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
- 1996년 도입 첫해의 볼티모어시 명목상 계약비용은 0.2% 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계약비용은 2.4% 감소함
- 생활임금제 도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예산의 0.1%보다 적게 나타남(Jeff Thompson and Jeff Chapman, 2006)
- 노원구의 2012년 예산은 4300억원 이상이며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 7천만원에 불과
- 생활임금제는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지출되는 사회보장 비용 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캐나다 생활임금(<http://livingwageforfamilies.ca/>) 관련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시행전 보조금을 받던 이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일정수준 소득이 보장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50.4% 절약할 수 있었음(노원구·성북구·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
- 생활임금제 때문에 입찰자들이 공공계약의 참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음
- 공공계약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공공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찰과정에 대한 생활임금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트포트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입찰건수가 20% 증가했지만, 보스톤에서는 입찰건수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Mark Brenner and Stephanie Luce, 2005)

- 입찰 참가는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입찰을 포기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임
-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생활임금제 도입 후에도 입찰자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도 기업의 이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의미

33 생활임금제 도입과 기업생산성과의 관계

-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 상승으로 근무의욕이 고취됨
- 영국의 퀸메리 대학의 조사 결과 생산성, 서비스 전달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감소
- 생활임금제 도입 후 샌프란시스코의 가정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이직률이 57% 감소
- 샌프란시스코 공항보안담당 근로자의 이직률은 95%에서 19%로 감소
- 이직률 감소에 따른 노동자 교육비용의 절감 및 숙련 노동력의 확보로 인해 기업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III 생활임금제 시행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III 생활임금제 시행사례

1 국내사례

1.1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1.1.1 도입배경

- 공공부문에서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존재하며, 낮은 수준의 급여로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서울시의 노원구·성북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저임금 노동의 해소를 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제도도입을 추진

1.1.2 도입과정

- 2012년 4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 도입을 검토
- 그 후 참여연대는 노원구·성북구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생활임금 캠페인 제안
- 생활임금관련 기관들(노원구·성북구·참여연대)과 회의를 통하여 생활임금 우선적용대상 및 생활임금 기준액 등을 설정
- 2012년 11월 15일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을 발표
 - 우선적용대상은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액은 월 135만 7,000원
- 2013년 1월부터 우선적용대상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 현재는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원구·성북구·참여연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

-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빈곤기준을 적용하고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생활임금액은 월급기준으로 135만 7천원
- 월근로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493원
- 209시간 산정기준⁶은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무일을 만근할 경우 1일을 유급으로 처리
- 2013년 1월부터 적용 중인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생활임금 기준액인 월 135만 7천원의 산출근거
-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11년 연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평균 정액 급여는 234만 1,027원(①)
- 상대적 빈곤기준인 평균임금(①)의 50%를 적용한 금액은 117만 513원(②)
- 상대적 빈곤기준은 소득수준의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빈곤기준에 적용되는 비율은 주요기관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노원구 및 성북구의 사례는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8%를 가산한 금액은 18만 7,282원(④)
- 2인가구 기준 전국대비 서울시 물가는 16%가 더 높음(2012년 서울시 복지기준선 기준)
- 전국대비 16%가 더 높은 수준이므로 빈곤기준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16%에서 50%를 적용한 8%를 가산
- 결과적으로 노원구·성북구의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금액은 월평균 노동자임금의 58%를 적용한 135만 7,000원(천원미만 절삭)이며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6,493원이 됨

6

209시간 산정 내역은 4장 1절 박스를 참고

표 3-1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

(단위 : 원)						
① 2011년 연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평균임금	②평균임금의 50% (①×50%)	③서울시 생활 물가 반영분 (①×16%)	④서울시 생활 물가 반영분의 50%(③×50%)	⑤합계 (②+④)	⑥시급 (월209시간)	
2,341,027	1,170,513	374,564	187,282	1,357,795 (평균임금 58%)	6,496	
					1,357,000*	6,493

*천원 이하 절삭

자료 : 노원구·성북구(2012)

- 월급여 기준 생활임금 적용 방법
- 월기준 만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보조하는 형태
- 본봉, 기타급여, 수당 등과 관계없이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형태
- 예를들어 1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본봉이 100만원이고 수당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족분 15만7천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114 생활임금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 노원구·성북구는 동일한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과 방식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
- 해당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용 대상자로 선정
- 월평균 급여가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
- 노원구의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 총 계약인원 175명 중 68명이 생활임금 우선적용 대상자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 6,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3-2 노원구의 생활임금 소요예산 상세

(단위 : 명, 원)					
계약구분	인원	생활임금 대상자 수	적용 전 평균임금	적용 후 평균임금	연소요액
계	175	68	-	-	168,170,640
연봉제	108	58	1,270,837	1,379,735	106,070,040
시간제	67	10	1,268,500	1,357,840	62,100,600

자료 : 노원구·성북구(2012)

- 우선적용 대상자 총 68명 중 청소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안내, 사무보조, 경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 노원구 생활임금 우선적용 지급대상자 상세

(단위 : 명)						
계	청소	경비	사무보조	주차	안내	시설관리
68	43	5	6	2	10	2

자료 : 노원구·성북구(2012)

- 성북구의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 총 대상자는 83명으로 노원구에 비해 많으나 1인당 월평균 인상액은 낮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은 약 1억 2백만원 수준으로 추정
- 연간 필요액 산정 기준
 - 급여 : $78,115\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83\text{명} = 77,802,540\text{원}$
 - 시간외 수당(야간수당 포함) 7,818,600원
 - 퇴직급여 상승분 7,134,680원
 - 4대보험 상승분 9,232,920원
- 우선적용 대상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표 3-4 우선적용대상과 규모

구분	노원구	성북구
인원	68명	83명
평균 월 임금인상액	206,901원	78,115원
총 예산	168,170,640원	101,988,740원
직종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청소, 경비, 주차관리

자료 : 노원구·성북구(2012)

115 시사점

-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실제로 크지 않았음

-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 적용 비용은 2013년 전체 예산대비 각각 0.033%, 0.025%에 불과
- 실제 적용 대상자는 예상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연차에 따른 임금수준 향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 적은 예산부담에 비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 급여수준 자체의 상승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의욕이 향상되었으며 신규채용의 경쟁률이 높아짐(매일노동신문, 2013.06.24., [ISSUE]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제정운동 ... 저임금 노동시장 균열 일으킬까)
- 그러나 대상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원구 전체근로자는 10만 3,761명이지만 생활임금 우선적용 대상자는 68명에 불과
- 근로자들의 근로만족도가 높아지긴 하였으나 초과근무 기피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생활임금만큼의 월급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월급여가 생활임금 이하일 경우 부족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똑같음
- 생활임금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자체 수준과 상황에 맞는 적정 생활임금안 마련
- 생활임금 확대적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생활임금 적용을 민간위탁 및 조달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2 경기도 부천시

1 2 1 도입배경

-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 2011년 기준 부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태

표 3-5 경제활동지표 비교

(단위 : %)						
구분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의왕시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56.7	59.8	56.3	58.6	57.5	61.2
고용률	54.4	57.6	54.6	56.9	55.3	59.1
실업률	4.1	3.7	3.2	2.8	3.7	3.5

자료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2012)

1 2 2 도입과정

-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이 도입된 노원구·성북구와 다르게 부천시는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주도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
- 2011년 12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제안
- 2012년 4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
- 세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 법제처는 생활임금조례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림
-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생활임금에 대해 법의 근거가 없어 시장(market)의 고유권한을 침해
- 법제처 검토 후 생활임금조례 추진을 다시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보고 주요 내용

○부천시 생활임금 지원조례안 법제처 질의결과 조례제정이 불가함

- 부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지원 가능여부: 불가(위법)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부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부천시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법인·단체 등에 생활임금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위법)
- 부천시청이 생활임금 상당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단체 등에 추가인건비 지급 여부: 불가
- 1차적인 비용마련의 부담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지우는 것이며, 지급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위반

- 법인·단체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지급 책무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불가(위법)
- 부천시 조례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2012)

1 2 3 적용방법

1) 임금실태조사

-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시행
 - 해당부서별로 사전 기초자료를 확보
 - 1차와 2차 조사는 부천시 및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
 - 부천시 해당부서별로 서면제출, 기초조사 등을 진행
 - 시급 6천원 이하, 월급 125만원 이하인 1,267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 3차 조사는 1~2차 조사 대상자 중에서 시급 기준이 5,800원 미만인 680명을 최종 선정하여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기타 파생임금을 파악

- 2~3차례의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4차 조사는 미조사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
- 재위탁 근로자는 임금실태조사에서 제외함
- 재위탁 근로자는 조사의 범위, 대상 선정, 정보의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에 한계가 있음

표 3-6 부천시 임금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2012)	조사대상	조사내용
1차 3.13~3.23	부천시 소속 근로자	시급 6,000원, 월급 1,250,000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2차 10.08~10.19	미조사된 부천시 소속근로자 및 위탁업체 근로자	
3차 10.22~11.13	시급 기준 5,800원 이하 근로자 680명	시급환산 5,800원 미만 근로자로 기본급과 기타 파생임금 포함 조사
4차 11.14~11.26	미조사된 근로자 추가조사 등	

자료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2012)

- 실태조사 주요 내용
- 부천시 20개 과·1개 공단의 70개 직종 근로자 680명의 임금지급 현황을 조사
- 1·2·3차 조사에서 23개 부서 중 교통시설과와 교통정책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이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병합
- 직종은 사업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4차 조사를 통해 일부 통합
- 2012년 11월 26일 기준 전체 680명 중에서 최저임금 4,580원 미만 지급근로자는 2.6%(18명), 최저임금 지급 근로자는 55.9%(380명)를 차지하고 있음
- 18명의 대상자 중 주 2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4명
- 14명은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상여금을 최대 940%까지 지급하여 임금 총액에서는 최저임금을 초과
- 2013년 최저임금 적용하면 전체 680명 중에서 4,860원 이하인 근로자

가 510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함

-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월 2,396만 7,891원으로 추정(보험료 및 퇴직금 포함 비용)

2) 생활임금 적용 방법(안)

- 지원기준
 - 생활임금의 취지와 의미에 중점을 두는, 즉 지원조례제정의 의미를 갖는 기준을 정함
 - 취지와 의미가 좋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부담문제를 수반하므로 부천시 재정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추진방법
 -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매년 확정,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진
 - 시행 첫 해에는 임금역전 현상과 근로자 간의 불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구간을 설정하여 산출
- 조정구간 설정
 - 경력 반영, 임금역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일정 구간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구간별 차등 인상액 제시
 - 조정구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금액의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음

표 3-7 조정구간의 설정(~ 5,800원)

(단위 : 원)

현시급	인상률(%)	최저임금 적용상승액	생활임금 적용상승액	인상합	적용금액
4,280	21.0	580	320.3	900.3	5,180
4,380	18.3	480	320.3	800.3	5,180
4,480	15.6	380	320.3	700.3	5,180
4,580	13.1	280	320.3	600.3	5,180
4,680	10.7	180	320.3	500.3	5,180
4,780	8.4	80	320.3	400.3	5,180
4,860	6.6	-	320.3	320.3	5,180
4,960	5.3	-	261.0	261.0	5,221
5,060	4.1	-	206.7	206.7	5,267
5,160	3.1	-	157.6	157.6	5,318
5,260	2.2	-	114.4	114.4	5,374
5,360	1.4	-	77.4	77.4	5,437
5,460	0.9	-	47.1	47.1	5,507
5,560	0.4	-	23.9	23.9	5,584
5,660	0.1	-	8.3	8.3	5,668
5,760	0.0	-	0.7	0.7	5,761
5,800	0.0	-	-	-	-

자료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2012)

3) 생활임금 설계(안)

- 생활임금(안)은 최저시급에서 6.6% 인상된 5,180원을 우선 적용
- 생활임금 적용 비용은 월 3,580만 7,701원, 연간 4억 2,969만 2,412원으로 산출
- 항목별 반영방법
- 보험료 및 퇴직금
 - 고용보험료(실업급여 : 0.5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명 미만 기준) 0.25%), 건강보험료(2.9%), 국민연금기여금(4.5%), 산재보험료(산업서비스 기준 : 1%)에 해당하는 사용자 납부 보험료 및 기여금의 총합 9.2%와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반영

- 구간별 인상액의 반영
 - 생활임금 적용 시 경력 반영과 시급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생활임금 적용비용 3,580만 7,701원 중 766만 8,067원으로 전체 비용에서 21.4%를 차지
 - 경력 반영과 시급 역전현상 방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인상률 변화에 따른 비용과 조정구간 설정에 따른 비용
 - 생활임금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인상률 조정에 따른 월 단위 비용은 생활임금 결정액에 따라 달라짐
- 2013년 생활임금 적용 시 소요되는 총 비용은 5,977만 5,592원이 됨
 -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월 2,396만 7,891원
 - 생활임금 5,180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3,580만 7,701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표 3-8 인상률 조정에 따른 비용의 변화

(단위 : 원)

인상률(%)	생활임금액	최저임금차액	인상조정구간 ¹⁾	생활임금적용비용	총비용 ²⁾	비고 ³⁾
33.6	6,493	1,633	7,100	197,489,808	221,457,699	50%
30.0	6,318	1,458	6,900	175,219,217	199,187,109	49%
20.0	5,832	972	6,500	114,881,149	138,849,041	45%
15.0	5,589	729	6,200	84,625,986	108,593,877	43%
10.0	5,346	486	6,000	55,508,866	79,476,757	42%
8.0	5,249	389	5,900	43,968,932	67,936,823	41%
6.6	5,180	320	5,800	35,807,701	59,775,592	40%
5.5	5,127	267	5,700	29,492,084	53,459,975	40%
4.5	5,079	219	5,700	24,129,887	48,097,778	39%
3.5	5,030	170	5,700	18,767,690	42,735,581	38%

주 : 1) 만약 생활임금액이 5,180원으로 정해졌다면 이전 5,800원 이하의 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표 3-7의 생활임금적용상승액을 반영하여 시급을 정한다는 의미

2) 2013년 최저임금 적용 시 소요금액 23,967,891원 포함

3) 2012년 1/4 분기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임금 12,876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
자료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2012)

13 참여연대⁷

131 생활임금 산정 시 고려사항

- 가족임금 개념을 적용하여 생활임금 산정
- 생활임금은 ‘생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
- 가족임금은 1인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1인 생계부양자 모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의 생계비용을 근로자 1인에게 생활임금으로 보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가족임금과 유사한 구조
- 결과적으로 표준가구(4인가구)를 선정하여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가구의 생활비를 측정
-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생활임금 산정
- 1차 적용대상으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우선 생활임금액을 산출
- 서울시·서울복지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적용 최저생계비(중소도시 기준)의 116~132% 수준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사례는 서울시 적용 최저생계비를 반영
- 생활임금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추어 변수를 조정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함

132 참여연대 제안 생활임금안

1)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산정
- 1인가구와 4인가구의 2011년 항목별 지출을 기준
- 일부 기준은 조정함
- 일부 비목을 제외하거나 비목별로 대체 가능한 자료를 구해 계산

7 권순원(2012)을 재정리

- 소비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로 가산
- o 주거비 반영 방법도 고려
- 생계비 중 주거비만 서울 수준으로 반영
- o 비목별 조정 및 변수 추가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안이 마련될 수 있음

표 3-9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항목 및 구성비 : 1인 및 4인가구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4인가구	
식료품	129,880	9.0%	379,190	9.9%
주류 및 담배	24,424	1.7%	27,654	0.7%
의류 및 신발	75,284	5.2%	189,179	4.9%
주거 및 광열	195,537	13.5%	252,186	6.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1,298	2.2%	105,359	2.7%
보건의료	63,751	4.4%	161,176	4.2%
교통	131,317	9.1%	336,707	8.8%
통신	69,408	4.8%	159,833	4.2%
문화오락	66,523	4.6%	164,851	4.3%
교육	21,480	1.5%	494,055	12.9%
음식숙박	184,315	12.8%	370,831	9.7%
기타상품 및 서비스	87,357	6.1%	267,485	7.0%
비소비지출	363,097	25.2%	932,660	24.3%
가계지출합계	1,443,669	100.0%	3,841,164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 1안 : 단신근로자 기준, 주거비-교육비 적정화
- o 1안의 생활임금은 도시근로자 1인가구 지출을 기준으로 해 일부 항목을 서울시 값으로 대체하여 산정
 - 1-1안은 도시근로자 1인가구 지출에서 서울시 최소주거비와 4인가구 중위 교육비를 더한 것
 - 1-2안은 1-1안에서 교육비를 서울시 200만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로 대체한 것
 - o 1-1안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실질적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 가구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와 교육비를 적정화
- 2011년 기준 4인가구 최소주거기준은 전용면적 37㎡로 단독주택 전세 기준으로 산정
 -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한다는 개념
 - 도시근로자 1인가구 지출에서 산정된 주거비 항목은 최저주거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산정에서 제외
- 교육비는 단신근로자 교육비에 4인가구 중위교육비를 더한 것
 - 단신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고 자녀의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 교육비 적용
 - 사교육비 과다지출 가구가 반영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4인가구의 중위교육비를 추가
 - 단신근로자 가구의 교육비는 차감하지 않음
- o 1-2안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주거비 항목은 1-1안과 동일
- 교육비는 2011년 서울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 지출기준을 적용
 - 사교육 조장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사교육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현실적인 사교육비를 포함
 - 200만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 24만5,600원을 추가

표 3-10 1안 : 단신근로자 기준, 주거비-교육비 적정화

			(단위 : 원)	
			1-1안	1-2안
도시근로자 1인가구 지출 - 주거 및 광열	1,248,134		1,248,134	
+ 주거비	373,114	서울최저주거비 (단독-전세기준)	373,114	
+교육비	378,789	4인가구 중위교육비	245,600	월200만원 이하 가구 평균 사교육비
합계	2,000,037		1,866,848	

자료 : 권순원(2012)

- 3) 2안 :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의 1/2(맞벌이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의 취업인원을 고려하여 맞벌이 소득을 기준
 -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 취업인원은 2인가구 1.4명, 3인가구 1.62명, 4인가구 1.67명
 - 맞벌이 비율은 3인가구 35.76%, 4인가구 46.28%
 - 4인가구를 기준가구로 선정한 이유
 - 도시근로자 가구의 최빈가구는 4인가구(32.3%)
 - 2안의 생활임금은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
 - 2-1안은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116~132%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에 하위기준 116% 적용
 - 2-2안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지출의 107%를 적용
 - 가계동향조사의 생계비는 중소도시가 아니라 전국 도시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 서울 도시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표 3-11 2안 :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의 1/2(맞벌이 기준)

(단위 : 원)		
2안	2-1안	2-2안
0.5 × 도시근로자 4인가구 지출(A)	A의 116%	A의 107%
1,920,582	2,227,875	2,055,023

자료 : 권순원(2012)

- 4) 3안 :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1인 생계비 산출
-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 최빈가구인 4인가구 생계비 구성을 유지하면서 단독 가구 형태로 전환하여 그 비용을 산출
 - 여러 종류의 가구균등화 지수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
 - Oxford 지수(구 OECD 지수), OECD 수정지수, 제곱근 지수, 보건사회연구원(1988)의 연구에서 산출한 지수 등이 있음

- 서울시 생계비 비율 적용
- 4인가구 생계비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값을 도출한 후 전국 도시 근로자 대비 서울시 생계비 116%, 107%를 대입
- 가구균등화 지수 중 OECD 수정지수를 활용한 값을 3안으로 제안
- 제공근 지수는 2안과 결과적으로 같음

표 3-12 3안 :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적용 1인 생계비 산출

가구규모		Oxford 지수 (구 OECD지수)	OECD 수정지수	제공근 지수	보건사회 연구원(1988)
1인	성인 1	1.0	1.0	1.0	1.0
2인	성인 2	1.7	1.5	1.4	1.6
3인	성인2, 아동 1	2.2	1.8	1.7	2.1
4인	성인2, 아동2	2.7	2.1	2.0	2.5
5인	성인2, 아동 3	32.	2.4	2.2	2.9
4인생계비	3,841,164원	1,422,653원	1,829,126원	1,920,582원	1,530,344원
3-1안	116%	1,650,278원	2,121,786원	2,227,875원	1,775,199원
3-2안	107%	1,522,239원	1,957,165원	2,055,023원	1,637,468원

자료 : 권순원(2012)

5) 종합

- 2011년 기준 생활임금
- 4인가구 기준 생활임금 수준은 월 1,866,848원 ~ 2,227,875원 정도
- 최저임금의 200%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 이상,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의 수준

표 3-13 참여연대 생활임금안 비교(2011년 기준)

생활임금안		최저임금(201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최저생계비(4인)
구분	금액	902,880	4,719,368	1,439,413
1-1안	2,000,037	222%	42%	139%
1-2안	1,866,848	207%	40%	130%
2-1안	2,227,875	247%	47%	155%
2-2안	2,055,023	228%	44%	143%
3-1안	2,121,786	235%	45%	147%
3-2안	1,957,165	217%	41%	136%

자료 : 권순원(2012)

- 2012년 생활임금 산정
- 2011년 물가률 기준으로 물가인상률과 근로자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2012년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1.4 국내사례 종합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부천시, 참여연대의 생활임금을 비교
- 생활임금액의 차이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부천시는 시급기준 생활임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참여연대는 월 기준 생활임금액을 제시함
- 참여연대안을 시급기준으로 산정⁸하여 세 기관의 생활임금액을 비교
- 부천시안이 5,18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참여연대안은 근로시간의 가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될 여지가 있으나 최소 5,63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특징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근로자 1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 부천시는 전면적인 실행을 위해 조례제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활임금액을 산출하였으며 근로자 1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에 가족의 개념을 포함시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활임금액을 산출하였으며 다양한 기준의 생활임금을 제시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시 보완해야 할 사항
- 서울시 성북구·노원구의 생활임금은 산정기준이 단순하여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⁸ 시급 산정의 기준은 4인가구의 구성원 중 1명이 전일제 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9시간,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365시간 기준임. 자세한 산정근거는 4장을 참고

- 부천시 생활임금안은 생활임금의 명확한 산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참여연대의 생활임금안은 지급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지급기준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표 3-14 국내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성북구·노원구	부천시	참여연대(2011)
생활임금액	6,493원	5,180원	5,630원~10,152원
산정방법	근로자 소득	실태조사	다양한 조합
산정기준	근로소득 1인	근로소득 1인	4인가구 소득 및 지출
특징	실행을 우선적 고려	조례제정을 고려	가구원 수를 고려
보완점	산정기준이 단순함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2 해외사례

2.1 영국 런던

- 생활임금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 기본생활비용 접근법(Basic Living Costs approach)은 소비(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
 - 소득분포 접근법(The Income Distribution approach)은 소득데이터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
- 생활임금 결정방법
 -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 값을 고려하여 산술평균을 한 다음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금액을 가산하여 생활임금액을 결정

2.1.1 기본생활비용 접근법

1) 전제 및 기준

- 기본생활비용(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 유형과 근로형태를 설정
 - 가계의 유형별 구분
 - 10세 및 4세 어린이를 둔 부부(4인가구)
 - 10세 및 4세 어린이를 둔 편부모(3인가구)
 - 자녀가 없는 부부(2인가구)
 - 자녀가 없는 한 명의 성인(1인가구)
 - 근로형태 설정
 - 근로형태는 전일제 노동과 시간제 노동으로 구분
 - 근로형태를 파악하는 이유는 세금공제 및 사회보장혜택에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
 - 가계 유형과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총 14개의 가계 유형이 나타남
 - 4인가구(5가지 유형) :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 3인가구(2가지 유형) : 전일제, 시간제
 - 2인가구(5가지 유형) :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 1인가구(2가지 유형) : 전일제, 시간제
 -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수당 및 세금 공제는 2가지(포함·미포함) 경우를 고려
- 생활비용의 측정 기준 선정
 - 기본생활비용을 주거비, 지방세, 교통비, 보육비, 기타 비용(표준 쇼핑 바스켓 방식(regular shopping basket)) 등의 카테고리로 나눔
 - 주거비·지방세·교통비·보육비 항목의 비용은 런던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
 - 기타 비용은 영국국가통계를 통해 지역별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사용
 - 런던의 물가상승률은 영국 전체와 똑같다고 가정하여 런던데이터에 전

- 국의 물가상승률을 대입하여 산출
 - 2005년 생활임금보고서의 방법론 개요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가족 유형의 주거 비용을 추론
- 2) 근로시간을 통한 가계 소득 추정
- o 전일제 노동자는 주 38.5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주 17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11~14개 유형의 가계를 분석
 - o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최저 시급 6.19파운드)을 받는다고 가정한 후 가계 유형별로 소득을 산정
 - o 세금을 제외한 소득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 포함 여부
 - 복지혜택을 더하여 총 소득을 산출
 - 복지혜택을 제외하고 자녀혜택만 고려하여 총 소득을 산출

표 3-15 아이가 있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소득

(단위 : 파운드)

구분	아이가 있는 부모(4인가구)				편부모(3인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시간제
수입 지출							
최저시급 적용		476.63	343.55	210.46	238.32	238.32	105.23
세금		63.80	31.90	0.00	31.90	31.90	0.00
세금 제외 소득		412.83	311.65	210.46	206.42	206.42	105.23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관련 혜택		267.21	228.47	283.03	237.49	346.91	310.85
총 소득		680.04	540.11	493.49	443.91	571.33	416.08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자녀 혜택		33.70	33.70	33.70	33.70	33.70	33.70
총 소득		446.50	345.30	244.20	240.10	240.10	138.9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표 3-16 아이가 없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소득

(단위 : 파운드)

구분 수입 지출	근로 형태	아이가 없는 부모(2인가구)				싱글(1인가구)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시간제
최저시급 적용		476.63	343.55	210.46	238.32	238.32	105.23
세금		63.80	31.90	0.00	31.90	31.90	0.00
세금 제외 소득		412.83	311.65	210.46	206.42	206.42	105.23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관련 혜택		0.00	23.08	107.73	106.36	8.52	310.85
총 소득		412.83	334.73	318.19	312.78	214.93	416.08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자녀 혜택		0.00	0.00	0.00	0.00	0.00	33.70
총 소득		412.8	311.6	210.5	206.4	206.4	138.9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3) 소비를 통한 가계 지출 추정

- 가계 유형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기본생활비용을 산정
- 가계 유형과 근로시간은 앞서 전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 주거비
- 사회주택 임대(Social housing rent)
 - CIPFA(the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는 런던의 각 자치구 데이터를 제공
 - 아이가 있는 부모 또는 아이가 있는 편부모는 방이 3개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
 - CIPFA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위값, 가중평균, 비가중평균을 구한 다음 산출된 2011년 임대료는 주당 104.39파운드
 - TSA(the new Tenant Services Authority)에서 사회적 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할 수 있으며 방이 3개인 집의 임대료 평균은 주당 108.36파운드

- 지자체 주택 41만 7,715세대와 그 외의 사회주택 37만 6,799세대의 가중치를 부여
- 임대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중평균을 구하면 아이가 있는 가계의 주거비는 106.27파운드로 결정
- 개인 임대
 -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큼
 - 싱글은 삶의 표준을 달성할 수 있는 원룸 또는 스튜디오타입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반면, 아이가 없는 부부는 독립적인 방이 있는 것을 원할 것으로 가정
 - 타입별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였음
 - 임대 분포의 일분위를 사례로 개인 임대주택의 전형적인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싱글의 임대 비용은 주당 99파운드, 아이가 없는 부부의 임대비용은 175파운드로 나타남
 - 지방세
 - DCLG(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따르면 런던의 가구는 band D 또는 그 이상의 band에 속해 있음
 - 런던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방세를 낸다고 가정하고 DCLG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band D의 평균 지방세를 계산
 - 두 사람의 지방세는 일주일에 25.17파운드, 싱글 또는 편부모 가족은 25%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주일에 18.87파운드로 계산
 - 보육
 - The Family Budget Unit은 가족 유형에 따라 양육시간을 가정
 -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용 발생을 가정
 - 아이를 유치원 또는 보모에게 맡기는 시간은 전일제 노동자가 40.5시간, 시간제 노동자가 19.5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 지불하는 양육비용은 6.35파운드로 가정
 - The Daycare Trust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당 평균 양육비용을 계산

- 런던은 영국에서 보육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
- 유치원 비용은 2세 이하가 233파운드인 반면, 2세 이상은 192파운드이며 주당 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2세 이하 231파운드, 2세 이상 232파운드로 전체 평균이 222파운드로 계산됨
- 주당 35시간의 아이 돌보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6.35 파운드로 산정
- 교통비
- Zone 1-3의 Oyster Travel Card(런던의 정기권 교통카드)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주당 교통비 측정

표 3-17 1주 교통비용

(단위 : 파운드)	
가계 유형	주당 비용
아이가 있는 부모(4인가구)	60.65
아이가 있는 편부모(3인가구)	30.32
아이가 없는 부부(2인가구)	60.65
아이가 없는 싱글(1인가구)	30.32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 표준 쇼핑바스켓의 지역적 가격차이
- 2004년 이후로 국가통계청에서 지역별 물가 추정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음
- 2004년 이후에는 런던의 쇼핑바스켓 하위구성요소에 국가의 물가성장률 추정치를 적용
- 하위구성요소의 항목은 식료, 의복, 개인관리, 가계상품, 가계서비스, 레저상품, 레저서비스, 에너지/연료, 국민의료보험 비용, 개인보험/연금, 애완동물, 자선기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항목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총 상승률을 구함

표 3-18 아이가 있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기본생활비용

(단위 : 파운드)

구분	아이가 있는 부모(4인가구)						편부모(3인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시간제(1)	전일제	시간제
수입								
지출								
쇼핑바스켓 비용		213.95	213.95	213.95	213.95	213.95	162.21	162.21
주거비		106.27	106.27	106.27	106.27	106.27	106.27	106.27
지방세		25.08	25.08	25.08	25.08	25.08	18.81	18.81
교통비		60.65	60.65	60.65	30.32	30.32	30.32	30.32
보육비		257.06	123.77	123.77	0.00	0.00	257.06	123.77
총합		663.01	529.72	529.72	375.63	375.63	574.67	441.38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표 3-19 아이가 없는 경우 영국 런던의 1주 기본생활비용

(단위 : 파운드)

구분	아이가 없는 부모(2인가구)						싱글(1인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시간제(1)	전일제	시간제
수입								
지출								
쇼핑바스켓 비용		128.37	128.37	128.37	128.37	128.37	100.09	100.09
주거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99.00	99.00
지방세		25.08	25.08	25.08	25.08	25.08	18.81	18.81
교통비		60.65	60.65	60.65	30.32	30.32	30.32	30.32
보육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합		389.10	389.10	389.10	358.78	358.78	248.22	248.22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의 비교
- 복지혜택을 더한 총 가계 소득과 가계유형 및 근로형태를 반영한 기본생활비용(가계지출)을 비교
- 대부분의 가계유형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충족할 수 없음

- 성인 2명이 전일제 노동을 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만 제외
- 그 외의 가계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가계 소득에 비해 기본생활비용이 높게 나타남

표 3-20 최저임금을 적용한 1주당 소득과 비용 비교 1

(단위 : 파운드)

구분 수입 지출	근로 형태	아이가 있는 부모(4인가구)			편부모(3인가구)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시간제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총 소득		680.04	540.11	493.49	443.91	571.33	416.08
기본생활비용		663.02	529.73	529.73	375.64	574.67	441.38
소득 - 비용		17.0	10.4	-36.2	68.3	-3.3	-25.3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총 소득		446.5	345.3	244.2	240.1	240.1	138.9
기본생활비용		663.02	529.73	529.73	375.64	574.67	441.38
소득 - 비용		-216.5	-184.4	-285.6	-135.5	-334.6	-302.4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표 3-21 최저임금을 적용한 1주당 소득과 비용 비교 2

(단위 : 파운드)

구분 수입 지출	근로 형태	아이가 없는 부모(2인가구)			싱글(1인가구)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총 소득		412.83	334.73	318.19	312.78	214.93
기본생활비용		389.10	389.10	389.10	358.78	248.22
소득 - 비용		23.7	-54.4	-70.9	-46.0	-33.3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총 소득		412.8	311.6	210.5	206.4	206.4
기본생활비용		389.10	389.10	389.10	358.78	248.22
소득 - 비용		23.7	-77.5	-178.6	-152.4	-41.8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 시간당 임금과 기본생활비용을 고려한 생활임금 계산
- 가계 구성별로 기본생활비용을 충족시키는 시간급 계산
- 가구형태별 인원수를 반영하고 생활에 필요한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가중평균 산출
- 시간급의 최저치는 법정 최저임금이며 최대치는 15파운드로 설정
- 가중평균을 통해 모든 가계 구성원을 고려한 기본생활비용
- 복지혜택을 포함한 모든 관련혜택을 받을 때의 시간급은 7.10파운드
- 복지혜택을 제외할 시의 시간급은 9.10파운드

표 3-22 기본생활비용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1

구분	아이가 있는 부모(4인가구)			편부모(3인가구)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시간제
수(명)	213,096	273,058	14,518	138,820	51,858	30,662
임금 수준 (복지혜택 포함)	6.19	6.19	8.40	6.19	6.50	9.35
임금 수준 (복지혜택 제외)	10.35	10.80	15.00	11.40	>15	>15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표 3-23 기본생활비용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2

구분	아이가 없는 부모				싱글	가중평균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전일제	
수(명)	424,346	108,864	14,368	79,751	416,037	1,765,378
임금 수준 (복지혜택 포함)	6.19	8.05	13.00	12.00	7.80	7.10
임금 수준 (복지혜택 제외)	6.19	8.05	13.00	12.00	7.80	9.1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212 소득분포 접근법

- 가계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결정
-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 DWP)는 가계평균소득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음
- 주거비용을 포함한 것과 주거비용을 제외한 것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으나 여기서는 주거비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
- 2010~2011년 가계 중위소득은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주당 359파운드이며 아이들이 있는 부부의 경우 506.19파운드임
- 균등화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계 구성원의 소득을 추정
- DWP는 다른 가계 유형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균등화 계산방법을 제공

표 3-24 가계 유형에 따른 가처분 소득 임계치

(단위 : 파운드)

구분	아이가 있는 부부	아이가 있는 편부모	아이가 없는 부부	아이가 없는 싱글
중위값	506.20	344.60	359.00	197.50
중위값의 70%	354.30	241.20	251.30	138.20
중위값의 65%	329.00	224.00	233.40	128.30
중위값의 60%	303.70	206.80	215.40	118.5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 중위값 수준에 따른 시간급 계산
- 영국의 정부기준 빈곤선(빈곤한계치)은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하여 가처분소득의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급을 계산
-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는 시간급은 7.80파운드
- 소득분포접근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수준인 6.19파운드로는 어떠한 가구도 빈곤기준인 중위소득의 60%를 충족시킬 수 없음
- 최저임금수준을 7.8파운드로 설정하면 약 75%가 빈곤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음

표 3-25 중위소득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1

소득	아이가 있는 부모				(단위 : 파운드)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싱글	시간제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80	7.20	11.00	10.40	7.90	12.45
중위소득의 65%	8.00	8.55	13.75	12.85	9.55	>15.00
중위소득의 70%	9.20	10.10	15.00	15.00	11.25	>15.00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10.90	11.55	>15.00	13.65	>15.00	>15.00
중위소득의 65%	11.35	12.25	>15.00	14.60	>15.00	>15.00
중위소득의 70%	11.85	12.90	>15.00	>15.00	>15.00	>15.0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표 3-26 중위소득과 근로형태를 고려한 시간급 계산 2

소득	아이가 없는 부모				(단위 : 파운드)	
	전일제(2)	전일제(1) 시간제(1)	시간제(2)	전일제(1)	싱글	가중평균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포함(복지혜택 포함)						
중위소득의 60%	6.25	8.70	14.15	14.20	7.35	7.80
중위소득의 65%	6.60	9.15	15.00	14.85	7.70	8.70
중위소득의 70%	6.95	9.65	>15.00	>15.00	8.10	9.55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 제외(복지혜택 제외)						
중위소득의 60%	6.25	8.70	14.15	14.20	7.35	9.55
중위소득의 65%	6.60	9.15	14.90	14.85	7.70	10.00
중위소득의 70%	6.95	9.60	>15.00	>15.00	8.10	10.4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2.1.3 영국 런던의 생활임금

- 기본생활비용접근법과 소득분포접근법의 결과값 비교
- 기본생활비용접근법 : 최저임금 6.19파운드는 59% 정도의 가구가 기본생활임금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포접근법 : 최저임금 6.19파운드는 중위소득 60%인 빈곤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시급을 7.8파운드로 설정하면 약 75%가 빈곤기준 이상의 소득을 획득
- o 빈곤한계임금(poverty threshold wage)을 통한 생활임금 산출
- 기본생활비용접근법과 소득분포접근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빈곤한계임금을 산술평균함
- 계산된 빈곤한계 임금수준
 - 복지혜택을 포함할 경우 7.45파운드
 - 복지혜택을 제외할 경우 9.30파운드

표 3-27 가중평균을 통한 빈곤한계 시간급

(단위 : 파운드)		
접근방법	혜택 포함	혜택 제외
기본생활비용(1)	7.10	9.10
소득분포(2)	7.80	9.50
(1)과 (2)의 평균	7.45	9.30

자료 :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2012)

- o 빈곤선의 기준을 7.45파운드로 상향하고 상향된 빈곤선에 대략 15%를 더한 시간당 8.55파운드를 생활임금으로 정함
- 15%는 개인경조사,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액

2.2 뉴질랜드

- o 뉴질랜드 생활임금 산정 방향
 - 가계 구성원을 설정하고 근로형태를 가정
 -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각 항목을 현실화
 -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생활임금의 현실화 추구

2 2 1 **가계 및 근로형태 가정**

- 가정의 전제조건
 - 단순화, 명확화, 인구학적 고려
- 가구원 수 가정
 - 4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명의 어른과 두 명의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을 채택
- 가계의 소득자 구성
 - 가계 소득 발생형태는 총 2가지로 한 명이 벌거나 두 명이 버는 경우임
 - 두 명의 소득자 중 한 명은 전일제 노동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반일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
- 뉴질랜드 가계경제조사(the New Zealand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HLFS))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4인가구(어른 2, 아이 2)의 68.5%가 맞벌이로 나타남
- 외벌이 가계는 소수에 불과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지출관련 자료 수집
 - 가계지출은 2차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이용
- 뉴질랜드 가계노동조사(the Statistics 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 자료
- University of Otago Department of Human Nutrition의 연간 식료비용 조사 자료
- 임대 수준은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에서 출판한 Rent Bond database 이용
- 웰링턴과 오클랜드의 중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5개의 그룹 조사

2 2 2 **빈곤측정과 생활임금 측정의 차이점**

- 빈곤측정방법과 포커스 그룹을 통한 생활임금 측정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

- 일부 전제조건
- 추가적인 소비 아이템 고려 여부
 - o 빈곤측정은 기본적인 빈곤선과 관련 있음
- 인터넷, 휴가, 저축 등의 추가적인 아이터మ్은 고려되지 않음
- o 생활임금 측정은 2명의 어른과 두 명의 아이가 표준적인 삶의 높은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
- o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인터넷, 휴가, 저축 등의 소비지출 아이터మ్ 추가
- 포커스 그룹을 통해 측정된 생활임금 값에는 지역특성과 그룹 구성원의 경험이 반영됨

2.2.3 포커스 그룹 조사 결과

- o 평균 8명으로 이루어진 5개의 포커스 그룹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선정
- 웰링턴 3팀, 오클랜드 2팀
- o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항목을 선정함
-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가계경제조사(HES : Household Economic Survey)를 통해 15개의 가계지출항목을 설정
-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응급상황과 기대하지 않은 지출(의료비, 장례식을 위한 이동 등) 포함
- o 포커스 그룹 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계
- 빈곤측정그룹은 최소한의 소비지출에 대한 충분한 수준을 정의하지만 생활임금은 개념이 보다 열려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음
- 조사된 소비지출 측정치는 1,881뉴질랜드달러인데 이 수치는 평균 2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로 구성된 가계의 9분위와 10분위(상위 20%)의 주당 소비지출과 비슷

표 3-28 뉴질랜드 생활임금 포커스 그룹 조사결과

(단위 : 뉴질랜드달러)

예산항목	Hutt Valley	Porirua	Newtown	Mangere	Kingsland	Average
식료	260	400	330	300	275	313
가계관리	30	90	50	105	65	68
주거	350	290	450	400	400	378
광열	100	100	100	160	45	101
통신	65	43	50	60	30	50
교통	180	250	140	180	129	176
여가	60	250	50	100	60	104
휴가	10	90	60	20	39	44
보험	33	40	15	9	-	24
생명보험	37	20	45	80	40	44
저축	160	250	60	50	15	107
응급상황	60	100	20	50	50	56
가정용 기기	20	30	15	30	33	26
가구	15	40	15	40	6	23
의료	20	35	20	5	7	17
의복/신발	60	115	50	110	60	79
보육	350	300	190	50	250	228
교육	21	60	60	30	-	43
계	1,831	2,503	1,720	1,779	1,504	1,881

- 포커스 그룹 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데이터를 현실화
- 포커스 그룹의 조사에서 최소 생활임금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제공되는 소비지출자료를 참고하여 대체하였으며 참고 데이터 목록은 아래와 같음
 - the University of Otago Food Costs Survey
 -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MBIE)
 - Tenancy Bond 데이터베이스
 - the Statics NZ Household Economic Survey(HES)

- 포커스 그룹의 조사값을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하여 총 지출 예상 금액은 1,387뉴질랜드달러로 줄어듦
- 식료비는 226뉴질랜드달러를 적용
- the University of Otago Food Costs Survey의 평균값
- 주거비는 275뉴질랜드달러를 적용
- Tenancy Bon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하위 25%의 방 세 개의 국가 평균 임대비용
- 저축액은 소비지출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104뉴질랜드달러는 비현실적으로 높고 총 소득의 Kiwisaver⁹ 2% 공제만 적용
- 보육비는 31뉴질랜드달러 적용
-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7.00뉴질랜드달러가 일반적
- 보육혜택을 적용받아 실제 보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10시간
- 보육비는 연평균소득 62,40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가구에 시간당 3.91 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실제 시간당 보육비용은 3.09뉴질랜드달러로 계산

표 3-29 2차자료를 반영한 지출항목 수정

포커스 그룹 예산 항목	(단위 : 뉴질랜드달러)	
	평균	추정치 대안
식료	313	226
가계관리	68	68
주거	378	275
광열	101	101
통신	50	50
교통	176	176
여가	104	104
휴가	44	44

⁹ 뉴질랜드 국민연금제도로 노후 연금 혜택 시점부터 인출이 가능

표 계속 2차자료를 반영한 지출항목 수정

(단위 : 뉴질랜드달러)

포커스 그룹 예산 항목	평균	추정치 대안
보험	24	24
생명보험	44	44
저축	107	0
응급상황	56	56
가정용 기기	26	26
가구	23	23
의료	17	17
의복/신발	79	79
보육	228	31
교육	43	43
계	1,881	1,387

※변경된 숫자는 진하게 표시됨

2.2.4 포커스 그룹과 가계경제조사 추정치 비교

- 먼저 가계경제조사 결과의 평균을 구하고 가계 평균소득 하위 50%의 소비지출항목에 따른 생활임금을 구함
- 포커스 그룹 항목과 HES 항목을 대조하여 일치시키고 변경하여 수정

표 3-30 유사한 항목과 비교

항목	포커스 그룹 아이템	HES 아이템
식료	Food	Food
의복/신발	Clothing/Shoes	Clothing and footwear
주거	Housing	Actual rentals for housing
광열	Power/Heating	Household energy
가구	Household operation+Appliances+furnishings	Household contents and services
의료	Medical	Health
교통	Transport	Transport
통신	Phone + Internet	Communication
여가	Activities/Recreation + holiday	Recreation and culture
교육	Education	Education
보험	Insurances + life insurance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저축	Saving + Exceptional emergency	Other expenditure
보육	Childcare	-

- 지출항목 수정 내역
- 가계조사 평균, 포커스 그룹 평균값은 제공된 내역을 기준으로 결과값 도출
- 포커스 그룹 평균 수정값은 식료, 부동산, 보육비(7뉴질랜드달러×20시간) 적용
- HES하위 50% 평균값은 HES 평균값에 식료, 임대 및 보육비(하위 50% 보육비 지원) 추정치를 적용
- 연평균 지출액 53,976뉴질랜드달러는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의 76.78%, 평균값의 63.78%에 해당하는 금액

표 3-31 HES와 포커스그룹(FG) 조사결과에 따른 생활임금액 추정

(단위 : 뉴질랜드달러)

소비지출분류 (HES+보육)	HES 평균	FG 평균	FG 평균 수정	HES 하위 50% 평균
식료	256	313	226	226
의복 및 신발	34	79	79	18
실제 주거임대 비용	90	378	275	275
광열	58	101	101	46
가계 서비스	64	117	117	33
건강	29	17	17	14
교통	177	176	76	121
통신	34	50	50	29
여가 및 문화	162	148	148	78
교육	32	43	43	3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5	68	68	64
기타 소비지출	183	163	163	66
보육	-	228	140	31
주당 소비지출 합계	1,245	1,880	1,503	1,038
연평균	64,722	97,760	78,156	53,976
연간 총수입의 1.5배	73,800	124,456	96,866	57,432
생활임금액	23.65	38.89	31.05	18.41

*HES : Household Economic Survey, 가계경제조사

**FG : Focus Group, 포커스 그룹

- 오클랜드 지역의 생활임금은 전국보다 높은 24.11뉴질랜드달러
- 주거비와 보육료가 전국에 비해 높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주거비는 275 뉴질랜드달러에서 438뉴질랜드달러로 수정 계산
- 보육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70뉴질랜드달러로 계산
- 주당 10시간 보육이 필요하며 시간당 보육비는 7뉴질랜드달러로 계산

표 3-32 전국과 오클랜드 지역의 생활임금액 비교

(단위 : 뉴질랜드달러)

HES에 보육비를 더한 소비지출 항목	전국과 오클랜드의 하위 50% 임대비용	
	전국	오클랜드
식료	226	226
의복 및 신발	18	18
실제 주거임대 비용	275	438
광열	46	46
가계 서비스	33	33
건강	14	14
교통	121	121
통신	29	29
여가 및 문화	78	78
교육	37	3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4	64
기타 소비지출	66	66
보육	31	70
주당 소비지출 합계	1,038	1,240
연평균	53,976	64,480
연간 총수입의 1.5배	57,432	75,213
생활임금액	18.41	24.11

※변경된 숫자는 진하게 표시됨

- 생활임금으로 계산된 18.41뉴질랜드달러는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4.91 뉴질랜드달러, 주당 196.40뉴질랜드달러가 높음

- 미국의 생활임금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산정 기준을 지니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아이다호의 주도인 보이즈(Boise)시의 사례와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
- 생활임금 산정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례
- 생활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추후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방법을 모색하기 위함

231 보이즈(Boise)시의 생활임금

1) 아이다호주의 주도 보이즈시의 생활임금 계산방법

- 가계의 예산구조 파악
-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방식을 사용하여 지출항목을 선정
 - 식료(Foods)
 - 주거 및 수도광열(Housing and Utilities)
 - 교통(Transportation)
 - 의료(Medical care)
 - 보육 및 교육(Child Care and Education)
 - 기타 가계소비(Other Household Expenses)
 - 주 또는 연방 세금(State and Federal Taxes)
- 가계 유형 구분
- 다섯 형태의 가계 유형을 선택하여 예산 구조를 가계구성별로 파악
 - 싱글 가구 : 1인가구
 - 편부모와 자녀(6 ~ 8세) : 2인가구
 - 맞벌이 부부 : 2인가구
 - 외벌이 부부와 영아 : 3인가구
 - 맞벌이 부부와 영아 및 취학아동 : 4인가구

- 2) 자료 수집
- 식료(Foods)
 - 미국 농무부의 월간 보고서 “Cost of Food at Home : U. S. Average at Four Cost Levels”를 통해 가계구성원별 식료품 지출을 조사
 - 주거 및 수도광열(Housing and Utilities)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Fair Market Rents
 - 주거 임대 비용에 수도광열비 포함
 - 1명 또는 2명의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침실 2개, 어른이 한 명인 가구는 1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임대한다고 가정
 - 교통(Transportation)
 - the Composition of consumer units의 연평균 소비자 지출조사를 통한 지출과 특성 자료
 - 가솔린, 엔진오일, 기타 이동수단, 유지, 수리, 보험료 등을 포함
 -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족의 어린이 지출 보고서를 통해 산출
 - 의료(Medical care)
 - 하위 20% 소득자의 평균 의료 지출
 - Quintiles of income before taxes의 연평균 지출과 특성 참고
 - 어린이는 USDA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y의 아이 한 명당 월 의료지출로 추정
 - 보육 및 교육(Child Care and Education)
 - 편부모 가계와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계는 보육이 반드시 필요
 - 취학어린이는 반일 보육비, 유아는 전일 보육서비스가 필요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Expenditure on Children by Families의 2008~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서부 도시지역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통해 보육 및 교육비 추정
 - 기타 가계소비(Other Household Expenses)
 - 세탁, 바느질 등 기타 소품과 관련된 지출은 가계지출의 5%

- 의복 및 개인적 비용 지출은 가계지출의 6%
 - 레크레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가계구성에 따라 월소득의 2~5% 지출
 - 학교 지원비, 은행비용, 신용카드 재정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음
 - o 주 또는 연방 세금(State and Federal Taxes)
 - 연방세, 지불급여세, 주 소득세 포함
 -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음
- 3) 보이즈시의 생활임금
- o 기본적인 가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에 정부지원 없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예산(지출) = 식료 + 주거 + 교통 + 의료 + 기타 가계 지출 + 보육 및 교육 + 세금
 - o 보이즈시의 생활임금 수준
 - 연간 2,08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계산
 - 세부항목별로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주거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3 2011년 보이즈시의 항목별 생활임금

항목	싱글가구	편부모와 자녀	맞벌이 부부	외벌이부부와 영아	(단위 : 달러)
					맞벌이 부부와 영아 및 취학아동
식료	244	384	448	581	699
주거	595	702	595	702	702
교통	277	377	455	599	686
의료	131	221	262	353	443
기타 가계지출	221	471	442	717	882
보육	-	184	-	-	441
세금	328	304	384	524	704
월 필요금액	1,797	2,643	2,586	3,476	4,557
연간 필요 총금액	21,566	31,722	31,029	41,708	54,685
생활임금	10.37	15.25	14.92	20.05	26.29

주 : 영아는 취학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취학아동은 6~8세로 초등학교 재학

232 **생활임금 계산기(living wage calculator)**

- 미국에서는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Dr. Amy K. Glasmeier가 개발한 생활임금 계산기를 제공(<http://livingwage.mit.edu/>)
- 지역별로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다양한 가계 구성원 반영
- 총 8개 유형의 가계를 제시하여 가계 유형별 생활임금 제공
- 지역별 생활임금을 제시
- 카운티(county) 규모의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
-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연도별 최신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
- 생활임금 계산기에 제시되는 금액과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는 생활임금 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시별로 이루어지는 생활임금 계산과 생활임금 계산기의 자료 원천이 다를 수 있음
-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활임금 계산기는 일종의 참고자료 역할을 함
-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생활임금
- 빈곤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시에 제시하여 비교가 쉽도록 함
- 일반적으로 가계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생활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Hourly Wages	1 Adult	1 Adult, 1 Child	1 Adult, 2 Children	1 Adult, 3 Children	2 Adults	2 Adults, 1 Child	2 Adults, 2 Children	2 Adults, 3 Children
Living Wage	\$11.20	\$22.70	\$26.33	\$33.28	\$16.73	\$20.80	\$22.15	\$27.29
Poverty Wage	\$5.21	\$7.00	\$8.80	\$10.60	\$7.00	\$8.80	\$10.60	\$12.40
Minimum Wage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그림 3-1 생활임금 계산기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활임금

출처 : <http://livingwage.mit.edu/states/06>

종합

- 생활임금액 비교
 - 영국은 8.55파운드, 뉴질랜드는 18.40뉴질랜드달러로 생활임금액이 각각 최저임금 대비 약 138%, 136% 정도로 나타남
 - 미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생활임금액도 가계구성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가계구성 비교
 - 영국과 미국은 다양한 가계구성원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액 산정
 - 뉴질랜드는 4인가구의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정의
- 산정방법 비교
 - 영국은 가계구성원의 지출패턴과 소득패턴의 두 값을 구한 다음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액을 가산
 - 미국은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고려
 - 뉴질랜드는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비용을 추정한 후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출수준을 항목별로 현실화함
- 산정 기준 비교
 - 영국은 지출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산정
 - 미국과 뉴질랜드는 지출만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산정
- 특징
 - 영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지출과 소득을 고려한 빈곤임금의 15%를 가산하여 최종 생활임금 시간급을 결정함
 - 미국은 생활임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가구별·지역별 생활임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정리
 - 뉴질랜드는 실제 조사결과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실화하는 작업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

표 3-34 해외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영국 런던(2012)	미국(2011)	뉴질랜드(2012)
생활임금액	8.55파운드 (약 14,809원)	지역별 가계구성별 다양	18.40뉴질랜드달러 (약 16,353원)
최저임금	6.19파운드 (약 10,721원)	지역별로 다양함 (보이즈시 7.25달러)	13.50뉴질랜드달러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4인가구 기준
산정방법	가계구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이용	기본비용에 세금지출 고려	도출된 지출항목값을 현실화
산정 기준	지출(생활비용)과 소득	지출(기본적인 생활비용)	지출(소비측면)
특징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부분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지역현황을 반영한 지출항목값 조정

IV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 1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 2 적용대상 검토
- 3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 설계(안)

IV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1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1.1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

1.1.1 산정 기본방향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국내 및 해외사례를 참고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및 참여연대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영국 런던, 미국 및 뉴질랜드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및 근로형태 가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
-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타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활용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서울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값을 추정
- 서울지역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
 - 전국데이터에 서울시의 물가수준을 반영
 - 전국데이터의 일부 항목은 서울의 현실을 반영한 값(통계자료)으로 대체
-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임금 산정
-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계산 기준을 적용해 제시
- 다양한 계산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계산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
-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국내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이 활용

되고 있음

- 소득기준 생활임금 산정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 지출기준 생활임금 산정 : 참여연대, 뉴질랜드, 미국
- 영국 런던은 소득과 지출 모두 고려
- 생활임금 산정의 척도로 상대빈곤기준선을 활용
- 주요기관 및 국가에서 사용하는 상대 빈곤기준선은 평균소득·중위소득 등의 33.3% ~ 60% 비율을 적용
- 서울시 상대빈곤선 기준은 평균 또는 중위값의 50%를 적용하고 이에 맞춰 생활임금을 산정

표 4-1 주요기관 및 국가의 상대빈곤기준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자료 : 권순원(2012)

112

기본가정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복잡한 실생활의 모든 변수 및 상황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고려
- 가계구성원과 가계 노동시간을 정의하는 이유는 모든 가구원 숫자와 가계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
-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계구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져야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생활임금 산정과정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급기준의 생활임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양
- 시간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근무하지 않음
-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업무라도 근무시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생활임금을 산정
- 4인가구를 기본 가계로 설정
- 부부 + 진학자녀(취학아동) + 영유아자녀(미취학아동)로 설정
- 가계구성을 4인가구로 가정한 이유
- 1인가구 및 2인가구가 가족유형을 대표할 수 없음(독신자 가구, 지방자취생 등)
- 4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세대 수는 적으나 해당하는 인구는 1인가구보다 많음
- 가족임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

표 4-2 2010년 서울시 가구원수별 세대 수 및 인원 수

가구원 수	세대 수	인원 수
1인	854,606	854,606
2인	781,527	1,563,054
3인	788,115	2,364,345
4인	807,836	3,231,344
5인	209,061	1,045,305
6인	47,659	285,954
7인 이상	15,493	449,69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 근로시간 기본가정
- 2012년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참고하여 전일제 노동은 1일 8시간·월 209시간, 시간제 노동은 1일 6시간·월 156시간으로 가정
- 주휴수당이 반영된 금액

①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에 받는 급여. 여기서 주휴일은 사용자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

② 월 209시간의 산출식은 '209=(40+8)×(365/7)/12'

- 40은 1일 8시간 5일근무인 소정 실근로시간
- 8은 1주 만근 시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365/7)/12는 1달에 몇 주가 있는지를 계산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표준 가계 구성
- 성인 ①은 전일제 노동(209시간)
- 성인 ②는 시간제 노동(156시간)
- 자녀 ①은 진학(초중고생)
- 자녀 ②는 영유아(미취학)
- 근로시간은 성인 ①과 성인 ②를 합쳐 총 365시간

1.2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방법

1.2.1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산정

-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산정방법과 유사한 방식
- 차이점은 전일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것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본가정을 따름
- 2012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서울의 상용·비상용 근로자 소득을 파악
-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A) : 2,469,814원
- 서울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B) : 2,938,614원

- 전국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C) : 1,292,739원
- 서울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 o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서울의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를 추정
- 비례식을 사용하여 (D)의 값을 추정함
- 전국 상용근로자와 전국 비상용근로자의 임금비율과 서울 상용근로자와 서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A) : (C) = (B) : (D)를 적용하면 (D)의 값은 1,538,116원으로 산정
- $2,469,814 : 1,292,739 = 2,938,614 : (D)$, $(D) = 1,538,116$
- o 서울의 상용·비상용 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를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근로형태별 시간급을 추정
- 서울의 상용근로자의 시급은 14,060원으로 추정
- 서울의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은 9,860원으로 추정
- o 근로자 평균 임금을 고려한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은 5,980원
- 상대빈곤기준인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여 생활임금기준 설정
- 중위값이 제공되지 않아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대빈곤기준 적용
-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에 상대빈곤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시간급으로 계산
- $[\{(B)의 시급 14,060원 \times 1/2 = 7,030원\} + \{(D)의 시급 9,860원 \times 1/2 = 4,930원\}] \times 1/2 = 5,980원$

122 가계소득고려 생활임금 산정

- o 4인가구의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국 런던의 소득을 이용한 생활임금 산정 방법과 유사한 방식 적용
- o 성인(부부)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기본가정을 따름
- o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조사된 4인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용
- 전국의 4인가구 소득 중위값은 405만 8천원

-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지역별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함
-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09년 이후 서울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데이터를 추정하여야 함
- 서울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방법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4인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추정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음
-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448원
- 전국 4인가구 월 소득의 중위값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후 빈곤기준선을 적용하여 시간급을 계산
- $4,058,000\text{원} \times 116\%(\text{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times 1/2 \div 365(\text{총근로 시간}) = 6,448\text{원}$

123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

- 4인가구의 지출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일부 값은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
- 영국 런던, 뉴질랜드, 미국 등이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
- 가정에 따라 성인 2인의 근로시간은 365시간
-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 지출수준을 추정
- 항목별 중위수 추출 후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후 서울의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의 빈곤기준(중위값의 50%)을 산정
- 일부 항목은 가계동향조사 이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값들로 수정
- 가계동향조사에서 일부 항목은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

- 예를 들면 가계동향조사의 '주거 및 수도광열' 항목에는 월세가 포함되지 않음
- 주거임대료, 사교육비, 보육비용 등은 서울시의 현황이 반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 주거임대료 600,000원은 '서울시 주택실거래가자료'의 월세 43㎡의 월세평가액
- 43㎡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4인 최소 주거기준
- 진학자녀 1인 사교육비 156,000원은 서울시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적용
- 사교육 항목은 논란의 소지가 많으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필수 지출로 인정
- 영유아자녀 1인 지출금액 98,400원은 소득 하위 30%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적용
-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249원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출을 파악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233만 6,854원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비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51만 5,817원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출의 중위값에서 상대빈곤기준인 50%를 적용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비지출 중위값에 50%(a)를 적용하면 116만 8,427원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비소비지출 중위값에 50%(b)를 적용하면 25만 7,908원
- 서울시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의 총 합계는 85만 4,400원(c)
- 이들을 더한 값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6,249원
- $\{(a) + (b) + (c)\} / 365(\text{총 근로시간}) = 6,249\text{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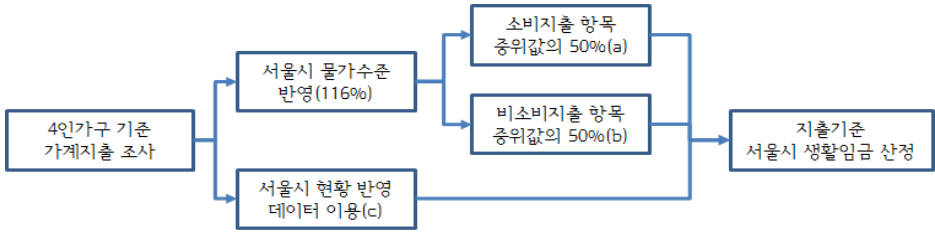


그림 4-1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 과정 모식도

표 4-3 가계동향조사 2012년 소비지출 중위수 및 서울 물가 반영

(단위 : 원)

구분	전국 중위수	서울 물가수준 반영
소비지출 항목별 합계	2,014,530	2,336,854
식료품	345,210	400,444
주류 및 담배	11,350	13,166
의류	129,000	149,640
주거 및 수도광열	208,823	242,23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3,215	38,529
보건	51,800	60,088
교통	220,500	255,780
통신	164,060	190,310
오락·문화	77,720	90,155
교육	270,000	313,200
음식·숙박	326,000	378,160
기타상품 및 서비스	176,852	205,148

표 4-4 가계동향조사 2012년 비소비지출 중위수 및 서울 물가 반영

(단위 : 원)

구분	전국 중위수	서울 물가수준 반영
비소비지출 항목별 합계	444,670	515,817
경상조세	46,150	53,534
비경상조세	0	0
연금	128,700	149,292
사회보장	114,820	133,191
이자비용	0	0
가구 간 이전지출	100,000	116,000
비영리단체로 이전	55,000	63,800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 반영 생활임금 산정

-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이용하고 일부 값은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
- 기존사례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경우가 없음
- 가정에 따라 성인 2인의 근로시간은 365시간
-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을 제시해 줌
-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 5,550원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으며, 이를 감안하여 서울의 최저생계비를 추정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각 항목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
- 서울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73만 4,838원으로 추정
- 최저생계비의 일부 항목은 서울시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값들로 현실화 시킴
- 주거비는 4인가구 최소 주거기준인 43㎡의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재산정해 기존값을 대체
-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의 데이터와 동일
- 교육비는 진학자녀 1인 사교육비와 미취학자녀 1인 사교육비를 더한 값을 기존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대체
-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의 데이터와 동일
-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생활임금은 6,116원
- (최저생계비 × 116%)의 결과값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대체
- $2,232,580\text{원} \div 365(\text{총 근로시간}) = 6,116\text{원}$

표 4-5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을 반영한 항목별 지출내역

항목	최저생계비(A)	(단위 : 원)	
		서울 물가수준 반영 A×116%(B)	B의 현실화
식료품비	564,330	654,623	654,623
주거비	236,908	274,813	600,000
광열수도	110,389	128,051	128,051
가구집기	43,392	50,335	50,335
피복신발	61,694	71,565	71,565
보건의료	66,560	77,210	77,210
교육	70,556	81,845	254,400
교양오락	29,020	33,663	33,663
교통통신	152,606	177,023	177,023
기타소비	88,080	102,173	102,173
비소비	72,015	83,537	83,537
합계	1,495,550	1,734,838	2,232,580

125

산정 방법 종합

- 제시된 생활임금 산정기준의 특징
-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액은 최저 5,980원에서 최대 6,448원까지 4가지 방안을 제안함
- 생활임금제 우선 시행 또는 조례제정 등을 고려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려고 노력
- 산정방법에서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가급적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음
-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는 현실화시키려고 노력
- 4인가구를 선정하고 가구구성원(부부, 진학자녀, 영유아자녀)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산정
- 이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모든 가계를 고려하여 생활임금 수준을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근로유형 및 근로시간(전일제 1일 8시간, 시간제 1일 6시간)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초과근무는 고려하지 않음
- o 종합
- 서울시 생활임금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기준 방안을 선택
- 생활임금의 범위 설정을 통하여 유동적인 생활임금액 선정 방안 모색이 가능
- 생활임금제 시행 시 제기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 가산 금액의 비율 조정 모색
- 영국 런던은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시급수준을 결정한 다음 15%의 금액을 가산
- 따라서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액에 불확실성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

표 4-6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자료 원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기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기타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4인가구 전체소득	4인가구 가계지출	최저생계비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빈곤기준 적용	근로소득의 평균 50%	가계소득의 중위수 50%	가계지출의 중위수 50%	-
특징	상용·비상용 근로자소득고려	가계 전체의 소득 기준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생활임금 추정액(원)	5,980	6,448	6,249	6,116
최저임금 대비 비율	약 1.23배	약 1.33배	약 1.29배	약 1.26배
장점	1인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국가의 최저생계기준 충족
적용의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어려움	비교적 어려움

적용대상 검토

2.1 근로형태에 따른 적용대상자 검토

2.1.1 공공부문의 다양한 근로형태

-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는 여러 가지 근로형태와 사업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 방식도 다양
- 직접고용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공무원 급여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지칭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일부기능을 타 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사업
 - 위탁사업은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맡김
 - 급여규정은 사업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함
- 발주공사는 공공부문에서 공사 등을 발주하여 관련업체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
 - 입찰을 할 때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을 제시
- 보조사업(인건비 지원 등)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급여수준은 중앙정부에서 결정
-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 중앙정부에서 임금지급기준을 제시해 줌

2.1.2 적용대상 선정 과정

- 근로형태에 따른 생활임금의 우선적용대상으로 민간위탁부문을 선정
- 직접고용은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외
- 지자체가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제외
- 발주공사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어려움

- 결과적으로 민간위탁부문에 우선적용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o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현황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은 2013년 3월 1일 현재 총 346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수탁기관 직원은 정규직 9,841명, 비정규직 2,822명 등 총 12,671명으로 구성
- o 우선적용대상 선정 방향
-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 생활임금 적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관
-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

2.2 우선적용대상 검토

2.2.1 우선적용대상자 선정

- o 업종별 고려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공공부와 관련 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선정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체 업종에서 3번째로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냄(서울시 기준, 표 2-9 참고)
- o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우선적용대상자로 선정하여 임금실태조사 시행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담당
 -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이 용이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3 우선적용대상(서울시설관리공단)의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2.3.1 서울시설관리공단 개요¹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은 2013년 3월 1일 현재 1,853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1,521명, 비정규직은 332명
 -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은 총 20개이며 소요예산은 1,935억 2,190만 1,000원
- 주요 업무는 순수민간부문에 맡기기 어려운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 유지 및 관리가 대부분
 - 주요 업무내용은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관리 및 감독 등

2.3.2 임금실태 현황

- 임금적용 현황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1,652¹¹명으로 급여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음
 - 비정규직의 급여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정규직과 같은 급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계절적 요인, 부서별 관리, 사업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인원은 유동적으로 변화
 -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직)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92명¹²

¹⁰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고(<http://www.sisul.or.kr>)

¹¹ 2012년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연간 만근기준 임금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참고

-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
- 연간 만근기준과 본봉 9백만원 이상(1일 8시간·1년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지급총액 2천만원 이하는 47명
- 생활임금액 중 가장 낮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액수(5,980원)를 적용할 경우 연간 급여는 1,499만 7,480원
- 지급총액 2천만원 이하 47명 중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명에 불과함
- 비정규직 부문은 정규직에 비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생활임금의 적용가능성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월급여를 기준으로 2012년 12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92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모색
- 공제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총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를 파악하며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등은 총지급액에서 제외
- 확보된 비정규직 임금자료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금액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임금내역 파악이 필요함

2.3.3 생활임금 적용 가이드라인

- 만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공제 이전의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음

12 비정규근로자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별 인원이 지속적으로 변동됨

- 공단 자체의 임금수준이 높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타 수당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 비정규직은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
- 청계천관리처, 강북주차관리소, 도로관리처 등 일부 사업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생활임금액 중 가장 높은 가계소득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총 19명이며 추가 급여로 필요한 금액은 월 123만 2,918원으로 추정
- 가장 낮은 금액인 근로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명이며 추가 급여로 필요한 금액은 월 8,820원에 불과

표 4-7 생활임금 적용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추가소요금액 추정

구분	(단위 : 원)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생활임금 시간급	5,980	6,448	6,249	6,116
생활임금 월급	1,249,820	1,347,632	1,306,041	1,278,244
적용대상인원	1명	19명	16명	15명
총 소요금액 추정	8,820	1,232,918	499,107	61,660

3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 설계(안)

3.1 개요

- 생활임금 계산기는 다양한 가계형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틀이며 생활임금 적용의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함
- 생활임금 산정은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적정 가족임금
 - 4인가구를 기준으로 다양한 가계구성의 조합이 가능함
 -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가족구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음

- 가족구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원칙이 무너짐
- 미국의 생활임금 계산기
 - 생활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계구성원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음
- 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생활임금 시간급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현재 임금과 생활임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 생활임금 계산기는 카운티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있음
 - 2000년 생활임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4년 첫 번째 버전이 탄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생활임금 적정 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의 생활임금 계산기 모색
 - 가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계산기 방법론 모색
 - 가구 구성에 따른 생활임금 차이 고려
 - 지역별 물가수준을 감안
 - 생활임금 계산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생활임금액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3.2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과정

- 가구원 수 고려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출수준의 차이가 발생
 -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지출항목 중위값 합계는 1인가구 40만 4,730원, 2인가구 87만 8,037원, 3인가구 146만 586원, 4인가구 201만 4,53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노동가능 인원 수의 차이가 나며 근로형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함

- 1인가구는 노동가능 가구원이 1명이며, 4인가구는 최대 4명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한 가계에 2명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1인가구부터 N인가구까지 가구원별 생활임금을 모색
- 가구원 수별 생활임금액 산정
- 가구 구성원 고려
- 가구원 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다양한 가계 구성이 가능
- 4인가구 기준 총 7개의 가구유형이 존재(편부모, 자녀의 취학 여부 등을 반영)
- 부모의 근로형태와 가구 구성원을 고려하면 다양한 가계구성이 가능
- 지역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이 연구에서 제외
- 서울시 구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주거지와 일터가 다를 경우에 생활임금 적용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3.3 생활임금 계산기 결과

- 생활임금 계산기의 계산과정은 생활임금 산정방법(4장 1절)과 동일
-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계산기에서 제외함
- 근로소득기준은 소득기준 계산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지출기준임
- 가구원 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임금액이 똑같은 결과를 산출
- 1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1인가구의 생활임금 월 기준 금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함
- 가계소득기준 580,641원, 가계지출기준 65만 2,576원, 최저생계비 기준 95만 8,577원으로 모두 100만원 이하
- 전일제 노동자는 209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156시간 근로를 가정하면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1인가구 생활임금 계산기 작성 시에는 생활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

-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2인가구의 생활임금 월 기준액
 - 가계소득기준 125만 5,572원, 가계지출기준 98만 7,103원~114만 3,103원, 최저생계비 기준 135만 1,090원~145만 3,775원
 - 2인가구의 맞벌이는 근로시간이 많아지므로 시간급 생활임금은 낮게 책정
 - 특히 상용근로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가계지출기준 시급수준이 2,361원으로 계산되기도 함
 - 따라서 2인가구 중 편부모 가계만을 대상으로 우선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
 - 주거임대료는 400,000원으로 월세 2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료는 동일
 - 편부모와 부양자녀 1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194원에서 최대 9,319원

표 4-8 편부모+진학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6,008	5,469	6,956	209 시간
비상용	8,049	7,328	9,319	156 시간

표 4-9 편부모+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6,008	5,194	6,680	209 시간
비상용	8,049	6,958	8,950	156 시간

- 3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3인가구의 생활임금 월 기준액
- 가계소득기준 205만 5,039원, 가계지출기준 164만 9,311원~186만 2,911원, 최저생계비 기준 175만 9,806원~197만 3,406원
- 3인가구는 편부모 가계의 경우 생활임금 계산기 작성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에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낮은 시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보정작업이 필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
- 주거임대료는 500,000원으로 월세 3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
- 편부모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8,362원에서 최대 13,173원

표 4-10 편부모+진학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9,833	8,913	9,442	209 시간
비상용	13,173	11,942	12,650	156 시간

표 4-11 편부모+진학자녀+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9,833	8,638	9,167	209 시간
비상용	13,173	11,573	12,281	156 시간

표 4-12 편부모+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9,833	8,362	8,891	209 시간
비상용	13,173	11,203	11,912	156 시간

- 4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4인가구의 생활임금 월 기준액
- 가계소득기준 268만 9,482원, 가계지출기준 222만 3,136원~249만 4,336원, 최저생계비 기준 217만 4,980원~244만 6,180원
- 4인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고려
- 부부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203원에서 최대 15,989원

표 4-13 부부+진학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1,188	10,958	209 시간
비상용	15,087	14,989	14,681	156 시간
상용+상용	5,631	5,594	5,479	418 시간
상용+비상용	6,448	6,406	6,274	365 시간
비상용+비상용	7,544	7,495	7,340	312 시간

표 4-14 부부+진학자녀+영유아자녀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0,913	10,682	209 시간
비상용	15,087	14,620	14,311	156 시간
상용+상용	5,631	5,456	5,341	418 시간
상용+비상용	6,448	6,249	6,117	365 시간
비상용+비상용	7,544	7,310	7,156	312 시간

표 4-15 부부+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0,637	10,407	209 시간
비상용	15,087	14,251	13,942	156 시간
상용+상용	5,631	5,319	5,203	418 시간
상용+비상용	6,448	6,091	5,959	365 시간
비상용+비상용	7,544	7,125	6,971	312 시간

표 4-16 편부모+진학자녀 3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1,935	11,704	209 시간
비상용	15,087	15,989	15,681	156 시간

표 4-17 편부모+진학자녀 2명+영유아자녀 1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1,659	11,429	209 시간
비상용	15,087	15,620	15,311	156 시간

표 4-18 편부모+진학자녀 1명+영유아자녀 2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1,383	11,153	209 시간
비상용	15,087	15,251	14,942	156 시간

표 4-19 편부모+영유아자녀 3명 기준 2012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단위 : 원)

근로형태	가계소득기준	가계지출 + 실제 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근로시간
상용	11,261	11,108	10,877	209 시간
비상용	15,087	14,882	14,573	156 시간

V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 1 정책의 기본방향
- 2 실행방안

V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1.1 생활임금은 가족임금

- 생활임금은 가족임금(family wage)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 기원을 통해 알 수 있음
- 19세기 말 미국의 노동계급은 생활임금을 “가족임금”, 즉 생산현장의 남성노동자들이 가내의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임금액이라고 관습적으로 정의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는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규모로 제시되어야 함



그림 5-1 생활임금 슬로건

출처 : <http://livingwageforfamilies.ca/>

1.2 용이한 실행 전제

-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정교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산정방법이 단순하면 적용하기는 용이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산정방법이 복잡하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생활임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시범사업 적용 후 전면도입 검토

-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에 앞서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 제도실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면적인 도입에 대비
- 국내에는 생활임금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과 경험이 부족

14 생활임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
- 생활임금제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함
- 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도시행 여부의 핵심의 사결정자 중 하나인 시의회 등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행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함
- 공공부문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15 제도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근거가 필요함
- 조례제정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지자체장 또는 시의회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2 **실행방안**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도입검토단계, 도입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도입검토단계의 주요 과업인 생활임금도입의 필요성, 생활임금 산정방식 등은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음
- 도입준비단계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세부 수행해야 할 과업을 결정
- 실행단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시
- 생활임금과 관련된 주요 활동주체로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시의회, 산하기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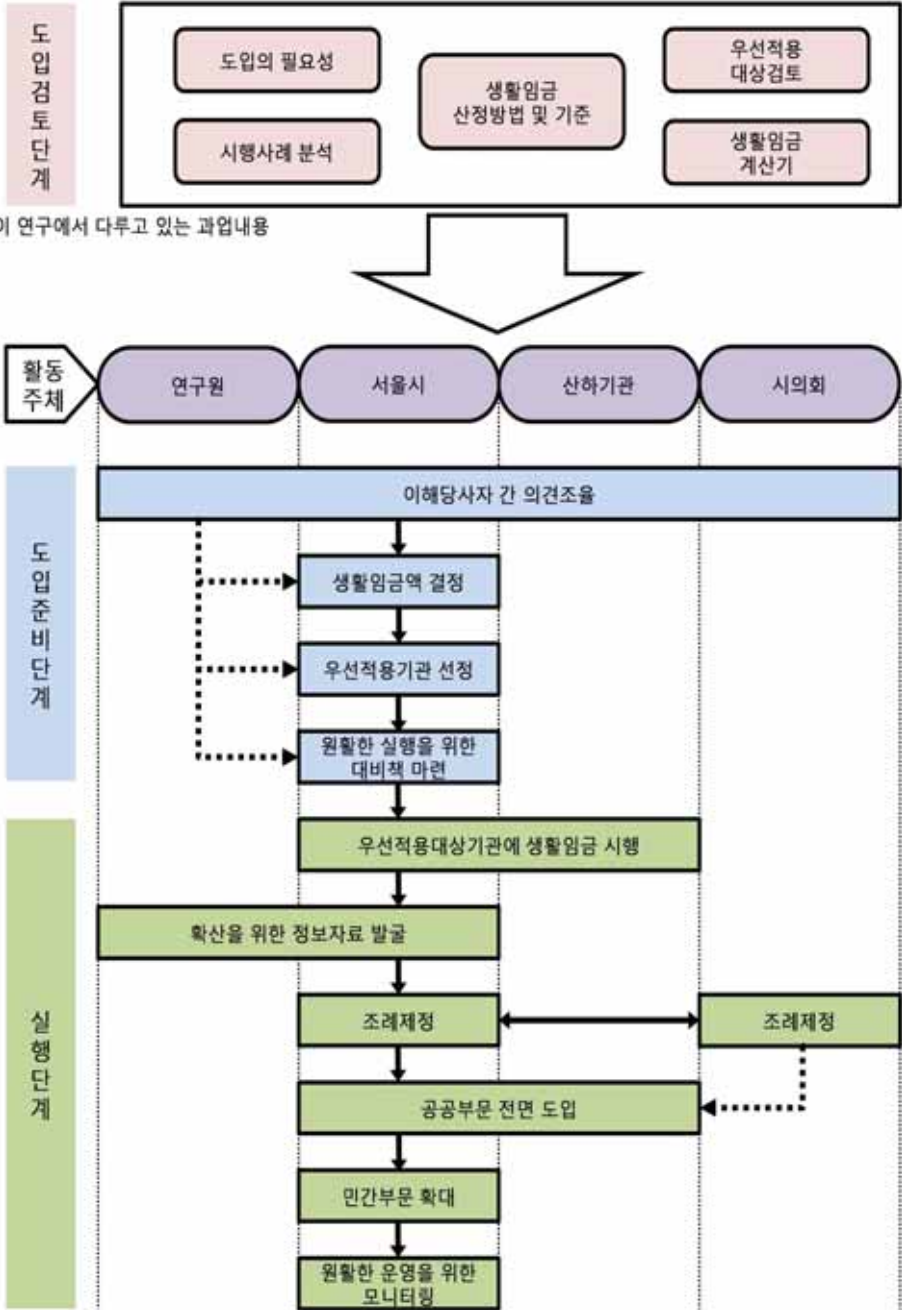


그림 5-2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모식도

2.1 도입검토단계

- 도입검토단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과업내용임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생활임금제 국내의 시행사례
 - 생활임금 산정방법
 - 생활임금 산정기준
 - 생활임금 우선적용대상 검토
 -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 제시

2.2 도입준비단계

2.2.1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 서울시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
 - 의견조율의 주요 주체는 서울시, 시의회, 산하기관 등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추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실행을 하는 입장에서 각 주체와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이끌어내야 함
 - 서울시는 생활임금 조례제정의 핵심의사결정자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조례제정에 앞서 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야 함
 - 산하기관은 생활임금제 우선적용대상이며, 추후 전면도입을 위해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생활임금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노력이 필요함
 - 사용자측은 생활임금이 급여 역할을 하므로 임금지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하게 되면 근로시간과 연동해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근로자측은 생활임금이 가족임금이므로 노동을 통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라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함
- 생활비는 통상 월단위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로 산정하기 어려움
-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도 진행되어야 함
- 추후 생활임금 조례를 염두에 둔다면 시의회의 설득은 필수적임

2.2.2 생활임금액 결정

- 이 연구(도입검토단계)에서 제시한 생활임금 산정방법(표 4-6 참조)을 근간으로 실제 적용해야 할 서울시 생활임금액을 결정
- 소득·지출 등을 고려한 4가지 산정방법 가운데 적용이 용이하면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
- 제시한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
- 생활임금액 결정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도 요구됨
- 생활임금 산정방법이 결정되면 산정식 구성요소에 대한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결정되는 생활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수정사항이 다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고자 별도로 포함시킨 주거비, 교육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제시한 산정방법에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추가하여 생활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
- 불확실성은 계량화하여 적정 비율을 구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계량화하기 어렵다면 영국 런던의 사례와 같이 정책적으로 적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꼽을 수 있음

2 2 3 우선적용기관(대상자) 선정

- 앞서 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전면도입보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 전면 도입에 앞서 제도 실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 등을 우선적용기관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참여기관이 많으며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초기부터 생활임금제를 일괄적·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용대상을 모색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민간위탁부문 근로자들을 우선적용대상으로 고려
- 공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수준의 임금실태를 보이는 직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또는 해당근로자가 우선적용대상 후보

표 5-1 우선적용대상 후보 선정

우선적용대상 후보	내용
서울시설관리공단	임금실태가 취약한 직종에 속함(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생활임금 적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시설관리 등이 주요 위탁업무
사회복지부부	상대적으로 임금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함 요양보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급여 13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2명으로 약 41.1%를 차지 ¹³

2 2 4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 생활임금제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13 신경희(2013)에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인용

- 문헌자료 및 국내외 우선적용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생활임금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참조
- 특히,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성북구의 사례를 분석하면 실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서울시 노원구 사례

- 2013년 생활임금 적용 후 일부 부작용 발생
- 초과근무 거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 노원구의 사례는 생활임금제 시행방법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운영, 적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매뉴얼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처음으로 실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 가이드라인 제공은 초기 운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
-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예시)
 - 생활임금제 도입 세부 절차
 - 적용대상자 파악 및 추가 소요 예산 산정 절차
 - 제도 실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부작용 제시
 - 제도 적용대상자와 미적용자 사이의 불만 해소 방안

2.3 실행단계

2.3.1 우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실행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원활하게 실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용 대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
- 서울시와 우선적용기관은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임금제 적용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파악
- 해당근로자가 받는 현재 급여와 결정된 생활임금액에 따른 급여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

232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 발굴

- 생활임금제의 적용기관 확대, 공공부문 전면도입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한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수행
- 생활임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도입검토단계부터 언급되었지만, 실제 제도 실행에 따른 우선적용기관의 긍정적 성과는 제도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생활임금제 실행의 긍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문제점, 애로사항 등 부정적인 정보도 수집하여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특히 제도 확산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자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의 과중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수집이 필요
- 생활임금제 실행으로 해당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예산은 제도 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
- 생활임금제 실행 후 우선적용기관의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인건비 부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5-2 기관별 예산부담 추정

기관명	내용	적용방법 (규모)
서울시 노원구	- 2013년 총 예산 5,033억 678만 5,000원 - 생활임금 적용 시 1억 6,817만 640원 소요 추정 - 전체 예산의 0.033%	우선적용 (일부)
서울시 성북구	- 2013년 총 예산 4,025억 2,750만 8,000원 - 생활임금 적용 시 1억 198만 8,740원 소요 추정 - 전체 예산의 0.025%	우선적용 (일부)
경기도 부천시	- 2013년 총 예산 약 1조 1,190억원 - 생활임금(5,180원) 적용 시 월 5,977만 5,592원 소요 추정 - 전체 예산의 0.064%	일괄적용 (전체)
서울시설관리공단	- 2013년 민간위탁사업 예산 연간 1,935억 2,190만 1,000원 - 생활임금 적용 시 최대 연간 1,479만 5,016원 ¹⁴ 소요 추정 - 전체 예산의 0.007%	시범적용 (전체)

14 이 연구의 대상자 92명의 적용금액임. 민간위탁사업 내역에서 파악된 비정규직 총인원 325명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 가상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예산부담 정도를 추정
- 예산부담에 비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도 병행
-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
-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 성공담 등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

233 조례제정

-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임
- 조례가 제정되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자가 교체되어도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
-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의견조율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함
- 조례제정은 생활임금제의 전면 도입 시 강력한 근거로 작용
-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임금 관련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가능성 여부를 검토
- 조례통과가 지연 또는 좌절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
- 실제 조례제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입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음

을 기준으로 하면 약 3.5배 정도이므로 대략 5,178만 2,556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의 약 0.027%에 해당

표 5-3 생활임금제 도입에 실패한 이유 및 도시

	실패 이유	도시
의회 논의 이전에 좌절된 경우	주(state) 법에 의해 생활임금법 도입이 좌절된 경우	New Orleans, Salt Lake City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된 경우	St. Louis
의회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좌절된 경우	시의회에서 기각된 경우(rejected proposed ordinance)	Dallas, Greensboro, Knoxville, Omaha
	ballot initiative defeated	Austin
	법은 통과되었지만 강제되지(enforced) 못한 경우	Buffalo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한 경우	Camden, Charlotte, Santa Rosa
	법이 철회된 경우	Hempstead(NY)
	개정안이 파기된 경우	Kalamazoo
	의회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	Marion(IN), Medford(OR), Nashville, Syracuse, Ventura
	법 통과 후 폐지된 경우	Pittsburgh
	시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에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South Bend

자료 : 주은수(2013)

2.3.4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

-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 우선적용기관의 실행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면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을 추진
- 민간위탁부문뿐만 아니라 발주공사,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
-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의 공공부문 전면도입을 전제로 하되, 도입 절차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계적 실행 : 기관(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도입시급성에 따라 산하기관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
- 일괄적 실행 :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전체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

2.3.5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 생활임금제 도입의 진정한 목표는 이 제도가 민간부문의 동참으로 이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2-9의 업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약 272만원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취약하지 않음(전체 평균 약 236만원)
-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계층 445만 4천명 중 비정규직은 381만 4천명으로 전체의 85.63%를 차지함
 - o 그러나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부문에 비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 임금수준이 오르면 사용자는 기관(기업)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서울시가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 실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없음
 - o 민간부문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기업)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법적 강제성을 지니기보다는 캠페인 성격으로 지속적인 생활임금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
 - o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일부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 서울시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또는 맺기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게 근로자의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강제
 -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요구조항으로 명시
- 서울시의 직·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는 기관(기업)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요구
 - 시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기업)
 -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기업)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 사용자·근로자측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필요
- 생활임금제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관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
 - 발주공사는 사업 특성상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중요
- 재하청단계에서의 임금지급 실태 파악도 필요
-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
- 제재조치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 제한, 입찰 시 감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수정사항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 시 보완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 생활임금제 산정방법은 실행을 거듭하면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
 - 서울시 현황을 반영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산정방법의 현실화를 추구
 - 제도 실행 후 산정방법 구성요소의 추가, 삭제, 교체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

생활임금 계산기의 정교화 작업 지속 및 활용

- IV장에서 제시한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를 근간으로, 계산기가 더욱 다양한 가족유형,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산정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생활임금액을 수정

- 가구원 수가 소수, 근로형태가 맞벌이일 때 주로 나타남
- 정교한 생활임금 계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
- 서울시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자치구 수준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도 가능
 - 생활임금 계산기는 적정임금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노동·복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
- 예를 들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 계산기의 산정금액 간 차이는 사회보장제도 등 타 제도를 통해 보전
-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 가능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순원, 2012,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원구, 2011,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2,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종합보고서」
- 신경희, 2013,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실태조사와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이정희, 2012,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국제노동브리프 Vol. 10, No 12, 한국노동연구원
- 조윤제·박창귀·강종구,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470호
- 주은수, 2013, 「미국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정책 : 생활임금제」
- 황선자·이철, 2008,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08-18
- AFL-CIO Department of Public Policy, 2000, **Living Wage Laws :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 Alan Manning, 2012, **Minimum Wage : Maximum Impact**, Resolution Foundation
- David Neumark, Timothy Riddiough and Anthony Yezer, 2011, **The Economic Impacts on New York City of Proposed Living Wage Mandate**, CRA Project No. D15863.00, Charles River Associates
- Donald Hirsch, 2012, **Working paper : uprating the out of London Living Wage in 2012**
- Fred Brooks, 2007, **The Living Wage Movement :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Working Poor**,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 Greater London Authority, 2012, **A Fairer London :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
- Jane Wills with Nathalie Kakpo and Rahima Begum, 2009, **The business case for the living wage : The story of the cleaning service a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Jane Wills and Brain Linneker, 2012,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ondon Living Wage**,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Jared Bernstein and John Schmitt, 2000,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 Policy lifts wages**, maintains floor for low-wage labor market
- Jeff Thompson and Jeff Chapman, 2006,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Living-Wages**,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170
- John Church and Samia Islam, 2012, **Boise City Living Wage Analysis 2011**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London :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 London Economics, 2009, **An independent study of the business benefits of implementing a Living Wage policy in London**
- Mark Brenner, 2002, **Defining and Measuring a Global Living Wage : Theoretical and Conceptual Issues**, the conference Global Labor Standards and Living Wages
- Mark Brenner and Stephanie Luce, 2005, **Living Wage in Practice : The Boston, New Haven and Hartford Experiences**, Amherst MA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 Matthew Pennycook, 2012, **What Price a Living Wage?: The impact of a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IPPR & Resolution Foundation
- OECD, 2011, **Divided We Stand : Why Inequality Keeps Rising**
- OECD, 2013, **OECD Factbook 2011-2012**
- Peter King and Charles Waldegrave, 2012, **Report of an investigation into defining a living wage for New Zealand**, Family Centre Social Policy Research Unit
- Rebecca Thesis, 2012, **THE FUTURE OF WORK : Trends and challenges for low-wage workers**, BRIEFING PAPER #341, ECONOMIC POLICY INSTITUTE
- Richard Anker, 2011, **Estimating a living wage : A methodological review**,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29
- Sondra Fogel, 2007, **The Working Poor and Social Justice Initiatives**, Alliance for Children and Families
- Scott Adams and David Neumark, 2005, **Living wage effects : New and improved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9(1), 80-102.
- Tim Moore and Jack Kennedy, 2012, **Living Wage Research for KPMG : Current Trends in Household Finances and Structural Analysis of Hourly Wages**, Markit
- Tracey Farrigan and Amy Glasmeier, 2001, **Living Wage and Job Gap Study of Beaufort County**, South Carolina

http://www.nowon.kr/	노원구청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www.sisul.or.kr/	서울시설관리공단
http://www.seongbuk.go.kr/	성북구청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kosis.kr/	통계청
http://www.epi.org/	Economic Policy Institute(미국 경제정책연구소)
http://livingwage.mit.edu/	Livingwage Calculator(생활임금 계산기)
http://stats.oecd.org/	OECD Stats(OECD 통계)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Living Wage in Seoul

Bong Choi·Bum-Sik Kim·Jung Hyun-Chul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instrument fo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Living Wage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in Seoul. There are some reasons why we introduce Living Wage. First, several difference exist between income and wages to each person and family. Second, minimum wage has many limitation to low-wage workers. Finally, Living Wage affects all workers who apply it.

This research includ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iving Wage, case study of Living Wage in Korea and overseas, calculating mechanism of Living Wage for Seoul metropolitan, policy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Living Wage etc.

We introduce some case studies in Nowon-gu, Seongbuk-gu, Bucheon-si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Also we take a look at some overseas cases including London in United Kingdom,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ach case has characteristics of calculation, standard and application of Living Wage. These case studies are utilized for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a Living Wage in Seoul metropolitan.

Thereafter we propose four alternatives of calculating method of Living Wage for Seoul metropolitan. Four alternatives of calculating method of Living Wage are as follows : earned income-based, household income-based, household expenditure-based, the minimum cost of living-based. We propose that a Living Wage in Seoul based on won per hour is 5,980(earned income-based), 6,448 (household income-based), 6,249(household expenditure-based), 6,116(the minimum cost of living-based). And this study adopts pilot case in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MFMC). After studying this pilot case, we conclude that it is not much the budget commitment about operation of Living Wage in SMFMC. And this study considers about Living Wage Calculator in Seoul metropolitan similar to tha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study proposes how the current Living Wage policy adopted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basic directions of adoption of Living Wage in Seoul are 'Living Wage as the family wage', 'easy-to-run', 'whole introduction after carrying out some pilot project', 'form a social consensus', 'establish an ordinance' etc.

The operation of Living Wage takes three steps that review the introduction stage, prepare the introduction stage and practice stage. In implementing Living Wage in Seoul metropolitan, main agents a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Institut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and the Seoul City Council.

Table of Contents

Chp.1 Overview of the Study

1.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2. Contents and Methods of Research

Chp.2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f Living Wage

1. Analysis of Income and Wage Structure
2. The Limits of a Minimum Wage
3. Benefits of Living Wage

Chp.3 The Case Study of Living Wage

1. Case Study of Korea
2. Case Study of Overseas

Chp.4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Living Wage in Seoul Metropolitan

1. Standard and Process of Calculation of Living Wage
2. Look for Application Object
3. Living Wage Calculator(proposal)

Chp.5 Policy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Living Wage

1. Basic Direction of Policy
2. Plan of Operation

References

서울연 2013-PR-09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10,000원 ISBN 978-89-8052-990-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